| 2023. 9. 13.(수) 10:00 |
| --- |
| 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br>제 2 차 본회의 |

# 검 토 보 고 서




##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8월 25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시 신속히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달성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수 및 설치·관리자로 책무 부여 범위 확대 (안 제4조)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적용대상 신설(안 제5조)

○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신설(안 제9조의2)

○ 개방화장실 지정요청 시 지정 가능 규정 신설(안 제12조)

○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 신설(안 제14조~안 제15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

5.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 및 범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며 여성과 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상벨을 비롯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달성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 ·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 · 관리자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있다”를 각각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외)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관리인에 대한”을 “따른”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중 “설치한 자는”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로, “그를 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제10조 중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을 “관리인은”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공중화

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공중”을 “사람들”로 한다.

②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영 제8조에 따라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이동·간이화장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화장실”을 “이동·간이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을 “사람은 행사 등이 끝났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점검·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기준 및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단위 : 만 원)

| 위반사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 | | |
|---|---|---|---|---|
| | | 1차 | 2차 | 3차 |
|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 100 | 15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
|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
|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40 | 60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

<table>
<tr><td colspan="14">전 경 사 진</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d colspan="2">화장실 명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지 역 구 분</td><td colspan="4"></td><td rowspan="3">설치 년도</td><td rowspan="3"></td><td rowspan="3">관리책임 공무원</td><td>소속</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설치 및 관리 주체</td><td>설치 주체</td><td colspan="4" rowspan="2"></td><td>직급</td><td colspan="2"></td></tr>
<tr><td>관리 주체</td><td>성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관 리 인</td><td colspan="6">(전화번호: )</td><td colspan="2">월평균 이용인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규 모</td><td rowspan="2">부지 (㎡)</td><td rowspan="2">화장실 면적 (㎡)</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 유형</td><td colspan="2">사용료</td></tr>
<tr><td>남</td><td>여</td><td>장애인</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동양식</td><td>서양식</td><td>유료</td><td>무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편의시설 내 역</td><td>세면시설</td><td>난방시설</td><td>냉방시설</td><td>환풍기</td><td>화장지 (자동판매기)</td><td>비누</td><td>수건 (에어타올)</td><td>탈취제 (방향제)</td><td colspan="2">청소도구함</td><td rowspan="2">기타</td></tr>
<tr><td>내부</td><td>외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시설괄리 내 역</td><td>년월일</td><td colspan="2">관리사항</td><td>금액 (천원)</td><td>년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액 (천원)</td><td>년월일</td><td>관리 사항</td><td>금액 (천원)</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td><td>지정 여부</td><td colspan="3">비상벨 (설치수)</td><td colspan="3">CCTV (설치수)</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abl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 · 복지증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말한다.<br>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
|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
| **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br>〈신 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 | |
|---|---|
| |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설치기준)** ① ----------<br>----------<br>----------<br>----------<br>----------<br>----------<br>--. |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 할 것 |
|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 할 것 |
|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3. ----------<br>---------- 있을 것 |

| | |
|---|---|
|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4. ---------- ---------- ---------- ---------- 있을 것 |
| 5. 군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삭 제> |
|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br>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br>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br>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외)<br>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

| | |
|---|---|
| |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 - 사람 ---------- ----------. |
|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 |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

| | |
|---|---|
| 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 한다.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② ---------- 따른 ---------- ----------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 |
|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 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 관리)** - ---------- 설치 · 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 관리---. |
| 〈신 설〉 | **제9조의2(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br>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br>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br>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 ·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관리인은 ----------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 · 관리 상황 등----------. |

| | |
|---|---|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 ---------- ------ 항상 ----------. -- - 평상시 ---------- ---------- ---------- ---------- --.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 ---------- ---------- ---------- ---------- -. |
| 〈신 설〉 | ②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영 제8조에 따라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 ② 제1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 사람들---------- ----------. |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 관리** | **제4장 이동 · 간이화장실의 설치 · 관리** |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 | **제14조(이동 · 간이화장실 설치)** ① -- |

| | |
|---|---|
| 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사람 ----------. |
| <신 설> |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이동 · 간이화장실의 설치 · 관리)** ① ----------. |
| 1.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 ·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 할 것 |
|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할 것 |
|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할 것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 ③ 이동 · 간이화장실--------- |

|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 지정할 것 |
|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 유지할 것 |
|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
|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 4. ---------- 비치 · 제공할 것 |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 사람은 행사 등이 끝났을 ----------. |
| <신 설> | 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 | ② ---------- --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 |

| | |
|---|---|
|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 ---------- ------.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 ---------- ---------- 지켜야 -------. |
| <신 설>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
| 1. · 2. (생 략) |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 <신 설> | 4.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점검 · 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부과기준---------- ----------.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등에 |

| | |
|---|---|
| |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별표 1 | 별표 1 |
| 1. 일반 기준 | 1. 일반 기준 |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2. 일반 기준 | 2. 개별 기준 |

(단위 : 만원)

| 위반사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 1차 | 2차 | 3차 |
|---|---|---|---|---|
|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 법 제21조제1항 제1호 | | | |
|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 법제21조제1항 제2호 | | | |
|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법제21조제1항 제3호 | 20 | 40 | 60 |
|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 | 20 | 40 | 60 |
|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 | 10 | 20 | 30 |
|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 법제21조제1항 제4호 | 10 | 20 | 30 |
|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 법 제21조제2항 | 5 | 10 | 20 |

(단위 : 만원)

| 위반사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 1차 | 2차 | 3차 |
|---|---|---|---|---|
|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 100 | 150 | 200 |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제21조제2항제2호 | | | |
|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21조제2항제3호 | | | |
|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20 | 40 | 60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0 | 20 | 30 |
|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 별지 제1호 서식

전 경 사 진

| 소재지 | | 화장실 명칭 | | | |
|---|---|---|---|---|---|
| 지역구분 | | 설치년도 | | 관리책임 공무원 | 소속 |
| 설치 및 관리 주체 | 설치주체 | | | | 직급 |
| | 관리주체 | | | | 성명 |
| 관리인 |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 | | |

| 규모 |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사용료 | |
|---|---|---|---|---|---|---|---|---|---|---|---|
| | | | 남 | 여 | 장애인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유료 | 무료 |
| | | | | | | | | | | | |

| 편의시설 내역 | 세면시설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환풍기 | 화장지(자동판매기) | 비누 | 수건(에어타올) | 탈취제(방향제) | 청소도구함 | | 기타 |
|---|---|---|---|---|---|---|---|---|---|---|---|
| | | | | | | | | | 내부 | 외부 | |
| | | | | | | | | | | | |

| 시설관리 내역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전 경 사 진

| 소재지 | | 화장실 명칭 | | | |
|---|---|---|---|---|---|
| 지역구분 | | 설치년도 | | 관리책임 공무원 | 소속 |
| 설치 및 관리 주체 | 설치주체 | | | | 직급 |
| | 관리주체 | | | | 성명 |
| 관리인 |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 | | |

| 규모 |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사용료 | |
|---|---|---|---|---|---|---|---|---|---|---|---|
| | | | 남 | 여 | 장애인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유료 | 무료 |
| | | | | | | | | | | | |

| 편의시설 내역 | 세면시설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환풍기 | 화장지(자동판매기) | 비누 | 수건(에어타올) | 탈취제(방향제) | 청소도구함 | | 기타 |
|---|---|---|---|---|---|---|---|---|---|---|---|
| | | | | | | | | | 내부 | 외부 | |
| | | | | | | | | | | | |

| 시설관리 내역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년월일 | 관리사항 | 금액(천원) |
|---|---|---|---|---|---|---|---|---|---|
| | | | | | | | | | |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 지정여부 | 비상벨(설치수) | CCTV(설치수) | | |
|---|---|---|---|---|---|
| | | | |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일부개정, 2023. 7. 21. 시행)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 ·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 운영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민간 위탁)**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7. 11. 일부개정 · 시행)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12. 10. 일부개정, 2021. 12. 23. 시행)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8월 25일

2. 제 출 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달성군 소재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일자리 활동 참여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노년기의 고립감·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경로당 안전지킴이 및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추어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일자리 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소득을 보충하여 노년기의 고립감·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용도 건물의 매입
2. 경로당 신·개축
3. 경로당 개·보수
4.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안전지킴이)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안전 및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경로당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 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회원 관리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

3.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5. 그 밖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경로당 안전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노인복지법」(2021.12.21. 일부개정, 2022.3.22. 시행]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11. 22.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2023.5.30. 일부개정 · 시행)

**제3조(경로당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사업 및 매입비용
2. 경로당 개 · 보수 사업
3. 경로당 운영비 및 냉 · 난방비
4.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호의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사업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 보조금
2. 작업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3. 작업장 운영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8월 25일

2.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평가할 의무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배출자의 유지·관리할 책무를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며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의무 신설(안 제8조)

○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책무 신설(안 제12조제4항)

○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개정사항 정비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평가할 의무 규정 및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배출자의 유지·관리할 책무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음식재료”를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재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음식재료”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 재료”로,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를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8.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생활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 · 보관 · 소비하는 자는”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할 구역”을 “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자 등의 책무)”를 “(사업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사람과”로,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를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으로, “이 조례”를 “조례”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음식물의 조리 · 보관 ·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을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권고 하거나 지도”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을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으로 한다.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제5항제1호 중 “집단급식소”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종전의 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사람”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

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8조(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수료라”를 “‘수수료”라”로, “종량제 시행”을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집 · 운반 ·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을 “수집 · 운반 ·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을 “분리배출 지역에서는”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을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로 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을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재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을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로,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 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른”으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 운반차량 및” 을 “전용 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자의” 를 “사람의” 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을 “경우, 대행 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 을 “제4항”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처리 방법 등)” 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처리 방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을 각각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을 “해당하는 사람은 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호에 따라” 로, “제1호의 규정” 을 “제1호” 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 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또는” 으로, “자에” 를 “사람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5조에 따른” 으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 을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을 “다량배출사업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 · 보관 ·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 재료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 · 보관 ·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1.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 ---------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 · 보관 · 소비 과정 등(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 |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 · 보관 ·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

| | |
|---|---|
| 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음식물 제조 · 가공 · 처리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 7.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

| | |
|---|---|
| <신 설> | 8.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 |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 군 ----------. |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 **제6조(사업자의 책무)** ---------- |

| | |
|---|---|
|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 사람과 ----------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 조례---------- 적극적으로 협력---. |
|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책무)** 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 |
|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 적극적으로 협력--. |
| <신 설> | **제8조(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 |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 권고하거 |

| | |
|---|---|
| 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나 시정을 요구----------. |
|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다. | ④ ----------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사람 ---------- |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 |

| | |
|---|---|
| <신 설> | 2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
| <신 설> |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 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 3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사람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 “수수료” 라 ---) ----------(---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 |

| | |
|---|---|
| 고,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
| ②·③·④(생 략) | ②·③·④(현행과 같음) |
|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 ⑤ ----------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2. ----------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
| 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 혼합배 | ④ ---------- |

| | |
|---|---|
| 출을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 ----------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 ----------. |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생략) |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 ---------- |

| | |
|---|---|
|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 |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
| <신 설> |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 |

| | |
|---|---|
| | 지 ·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br>----------<br>----------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br>----------<br>----------<br>----------<br>----------<br>----------. |
|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br>----------<br>----------<br>----------<br>----------<br>----------<br>----------<br>---------- 전용 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br>----------. |
|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 | ④ ---- 제2항----------<br>----------<br>---------- 사람의 ---------- |

| | |
|---|---|
| ·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경우, 대행 계약----------. |
|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제4항----------. |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
|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 ② 다량배출사업장---------- -- 해당하는 사람은 법 ---------- |

| | |
|---|---|
|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 제1호----------.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1. (생 략)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1. (현행과 같음) |
|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또는 ---------- 사람에 ---------- |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제15조에 따른 ----------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

| | |
|---|---|
|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 다량배출사업장---------<br>----------<br>----------<br>----------<br>----------<br>----.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2022.4.26. 타법개정, 2023.4.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 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2.11.29. 일부개정・시행)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3.8.11. 일부개정・시행)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 · 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 · 강추위, 폭우 ·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2014.4.22. 제정 · 시행)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 ·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8월 25일

2.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내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안 제3조~제4조)

○ 예방·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5.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군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생애주기별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위기 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 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3.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스마트복지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 ·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준용)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6. 13. 일부개정·시행)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 그 밖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4. 1. 제정·시행)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 · 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용이하게 하여 소유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한편, 이용자의 주차 안전 및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적용(소수점 이하 버림)(안 제15조제2항)

○ 철거 후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화 적용을 배제함 (안 제15조제3항)

5.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유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한편 이용자의 주차 안전 및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가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완화된 설치기준 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br>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br>① (현행 본문과 같음) |
| <신설> |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가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완화된 설치기준 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적용한다. |
|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에 따른다.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주차장법 [시행 2022. 6. 9.]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관련,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변경(안 제5조)

○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제3항)

○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19조)

5. 관계법령

○ 「양성평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관련,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 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행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br>1.~ 4. (생략) |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제5조제7호 ‘무료 순환버스 운영’의 삭제

○ 안 제7조제1호 기본시설 대관의 범위에 ‘회의실 및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 삭제

○ 안 제9조의2 시설 사용·이용 제한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자의 이용제한 내용 신설

○ 안 제13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액 구체적 명시

○ 안 [별표1]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에 사물함 이용 요금 구체적 명시 및 단체입장 할인율 명시, 대관료에 ‘회의실 및 강의실’ 삭제

○ 안 [별표3] 이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시설 : 강당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료 잔액 반환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

##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 : 원)

| 구분 | | 성인 (19세 이상) | | | 중.고생 (13~18세) | | | 유아,초등 (12세 이하) | | | 아쿠아로빅 | | 1일 입장 요금 | | |
|---|---|---|---|---|---|---|---|---|---|---|---|---|---|---|---|
| 수영장 | 이용요금(월)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3회 | 주2회 | 성인 | 중고생 | 유아초등 |
| | | 77,000 | 54,000 | 39,000 | 69,000 | 50,000 | 39,000 | 64,000 | 46,000 | 33,000 | 54,000 | 39,000 | 3,200 | 2,200 | 1,600 |
| 헬스장 | 이용요금(월) | 50,000 | | | | | | | | |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 | | | | | | | | | | | | |
| 비고 | | 1. 부가가치세액(10%)포함<br>2. 동일 단체 소속 1일 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 | | | | | |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시간

| 구 분 | 월~금 | 토 | 공휴일 | 일요일 |
|---|---|---|---|---|
| 수 영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전관 휴관 |
| 헬 스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
|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 | |

##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 구분 | 이용료 | 비고 |
|---|---|---|
| 문화강좌 이용료 | 100,000원 이하 | ·주1회 한달 기준 |
| 기타 |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br>·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br>·교재 및 재료비 별도 | |

### 3) 시설사용료

#### 가. 대관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강 당 | 오 전 | 30,000 | |
| | 오 후 | 50,000 | |
| | 야 간 | 70,000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설 비 명 |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피아노 | | 1회 | 30,000 | |
| 무대조명 | | 1회 | 25,000 | |
| 음향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 | 유선마이크 | 1회 | 개당 5,000 | |
| | 무선마이크 | 1회 | 개당 10,000 | |
| | CD 플레이어 | 1회 | 10,000 | |
| 무대시설 | 보면대 | 1회 | 10,000 | |
| | 의자 | 1회 | 10,000 | |
| 냉·난방 | | 1회 | 80,000 |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3】

#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할인율) | 비고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6. (생략)<br>7. 여성과 가족 등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 **제5조(업무)** ----------.<br>1. ~ 6. (현행과 같음)<br>7. <삭제> |
|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및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br>2. (생략) | **제7조(대관의 범위)** ----------.<br>1. 기본시설 : 강당<br>2.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br>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br>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br>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현 행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③ (생략)

1. (생략)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

3. ~ 4. (생략)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 구분 | | 성인 (만19세이상) | 중.고생 (만13~만18세)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아쿠아 로빅 | 1일 입장 요금 | 비고 |
|---|---|---|---|---|---|---|---|
| 수영장 | 이용요금(월) | 생략 | | | | | 부가가치세금액(10%)포함 |
| 헬스장 | 이용요금(월) | 생략 |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0원 | | | | | |
| 체형분석 | 이용요금 | 1회 5,500원 |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료 잔액 반환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 구분 | | 성인 (19세이상) | 중.고생 (13~18세) | 유아,초등 (12세 이하) | 아쿠아 로빅 | 1일 입장 요금 |
|---|---|---|---|---|---|---|
| 수영장 | 이용요금(월) | 생략 | | | | |
| 헬스장 | 이용요금(월) | 생략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 | | | |
| 비고 | |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br>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구 분 | 월~금 | 토 | 공휴일 | 일요일 |
|---|---|---|---|---|
| 수 영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전관휴관 |
| 헬 스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3) 시설사용료**<br>**가. 대관료**<br>(단위 : 원)<br>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br>강 당 / 오 전 / 30,000<br>강 당 / 오 후 / 50,000<br>강 당 / 야 간 / 70,000<br>회의실 및 강의실 / 1회(2시간) / 10,000<br>【별표 3】<br>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3) 시설사용료**<br>**가. 대관료**<br>(단위 : 원)<br>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br>강 당 / 오 전 / 30,000<br>강 당 / 오 후 / 50,000<br>강 당 / 야 간 / 70,000<br>삭제 / - / -<br>【별표 3】<br>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 구 분 / 감면율(할인율) / 비고 | 구 분 / 감면율(할인율) / 비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50%<br>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2023.4.1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7.30., 2016.10.31., 2018.5.2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시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신설 2017.8.10.>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7호에서 이동 (2017.8.10.)>

#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구)논공학생야영장은 1995년 폐교된 논공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다 2018년도에 일반에 매각하였으나, 개발 없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함
-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부지 11,506㎡의 창작캠핑장 및 158,121㎡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 하빈 감문리 일원의 대구교도소 이전 님비(NIMBY)현상 등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벗어나고 있고,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 지역 경제가 침체됨.
- 달서중고 후적지 17,009㎡, 연면적 7,446㎡의 건물을 매입·개발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문화 향유를 확대할 수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기존의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 2019년 노인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 복지관을 증축하고 신규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여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지역주민 및 다문화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논공, 기업하기 좋은 논공' 으로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하는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 논공읍 남리 1108번지, 북리 824-20번지를 매입하여 거점공간 (다담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달성군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취소

-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증설 공약사업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의 계획 수립, 2023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2023. 8. 8.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당초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 달성군보건소 기존 주차시설은 민원 및 직원들이 함께 주차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불편을 초래함
- 인접한 원교리 116번지 1,702㎡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야간에는 마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보건소 방문 민원 편의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위　　치 : 달성군 논공읍 하리 565번지 일원
- 기　　간 : 2023. 8. ~ 2026. 12.
- 규　　모
  - 학생 야영장 : 부지면적 11,506㎡ / 건물연면적 980㎡(지상2층)
  - 산림휴양시설 : 부지면적 158,121㎡
- 주요시설 : 숲속 쉼터, 맨발산책길, 창작놀이터, 도서관, 운동시설 등
- 총사업비 : 106억 원(전액 군비)

###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 위　　치 :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15 일원 달서중고등학교
- 기　　간 : 2023. ~ 2028.
- 규　　모 : 부지면적 17,009.8㎡ / 건물연면적 7,446.54㎡
- 주요시설 :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전시관 등
- 총사업비 : 378.5억 원(전액 군비)

###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2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 기　　간 : 2023. 7. ~ 2024. 12.
- 규　　모 : 부지면적 2,605㎡ / 건축연면적 2,785㎡, 건물 1동(지하1/지상2)

- 주요시설

| 구분 | 면적(㎡,당초) | 면적(㎡,예정) | 용도 | 비고 |
|---|---|---|---|---|
| 계 | 2,472.5 ➜ | 2,785.7 | | |
| 지하층 | 160.21 | | 전기실, 발전실, 기계실, 물탱크실 | |
| 1층 | 1,346.49 | | 강당,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탁구장,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등 | |
| 2층 | 965.8 ➜ | 1,279 | 노래방, 교육실, 식당, 서화실, 장기바둑실, 하늘정원 등(+ 건강프로그램실) | 313.2㎡ 증축 |

- 총사업비 : 17억 원(전액 군비)
  · 공사비 13.9억, 설계비 0.7억, 감리비 2.3억, 용역비 0.01억 원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일대(성원아파트~논공중앙시장)
- 기　　간 : 2023. 1. ~ 2026. 12.
- 규　　모 : 부지면적 108,025㎡ (※매입 807㎡)
- 주요시설 : 다담산책길, 다담둘레길, 다담바른길, 다담앞마당 등
- 총사업비 : 120억 원(전액 군비)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취소**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일원
- 기　　간 : 2023. 1. ~ 2024. 10.
- 규　　모 : 부지면적 144,500㎡, 건축연면적 2,897.1㎡(지상2층)
- 주요시설 : 게이트볼장 3면, 배트민턴장 9면
- 총사업비 : 30억 원(전액 군비)

※(당초)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변경)리모델링 사업
사업대상 건물 1,200㎡ 취득계획 취소

○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16번지
- 기　　간 : 2023. 10. ~ 2025. 5.
- 규　　모 : 부지면적 1,702㎡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50면 정도)
- 총사업비 : 36억 2,800만 원(전액 군비)
  · 부지매입비 29억 8,400만 원 공사비 6억 4,400만 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 당 초 | | | 금 회 | | | 계 | | | 비고 |
|---|---|---|---|---|---|---|---|---|---|---|---|---|
| | | | 건수 (필지/동) | 면적 | 금액 | 건수 (필지/동) | 면적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득 | 계 | | 2 (2) | 1,513 | 4,689,000 | 11 (76) | 192,065 | 13,830,919 | 11 (76) | 192,065 | 13,830,919 | |
| | 1.매입 | 토지 | | | | 6 (44) | 182,005 | 9,342,423 | 6 (44) | 182,005 | 9,342,423 | |
| | | 건물 | | | | 4 (31) | 9,747 | 2,799,496 | 4 (31) | 9,747 | 2,799,496 | |
| | 2.교환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3.기타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2 (2) | 1,513 | 4,689,000 | 1 (1) | 313 | 1,689,000 | 1 (1) | 313 | 1,689,000 | 증측 |

**※ 달성군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취소로 인해 건물 증축 1건(1,200㎡, 30억) 감 처리**

#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연번 | 지목 | | 재산의 표시 | | | | 취득대상수량(㎡) | 기준가격(원)(공시지가 × 면적)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재지 | | | 일단의수량(㎡) | | | | | 주소 | 성명 | |
| 1 (토지) | 대 | 대 | 논공읍 | 하리 | 565 | 9,114 | 9,114 | 2,229,284,400 | 2023.11.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75, 202호 | 토정개발 주식회사 | 매입 |
| | 학교용지 | 학교용지 | | | 563 | 2,033 | 2,033 | 244,976,500 | | | | | |
| | 전 | 전 | | | 512-1 | 59 | 59 | 7,109,500 | | | | | |
| | 전 | 전 | | | 513-2 | 126 | 126 | 15,183,000 | | | | | |
| | 학교용지 | 학교용지 | | | 895-2 | 174 | 174 | 20,967,000 | | | | | |

| 연번 | 지목 | | 재산의 표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재지 | | | 일단의 수량 (㎡) | | | | | 주소 | 성명 | |
| 2 (토지) | 임야 | 임야 | 논공읍 | 상리 | 산25 | 9,917 | 9,917 | 14,974,670 | 2024.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86-1 옥석타운 102동 512호 | 변성재 | 매입 |
| | 임야 | 임야 | | | 산28 | 13,091 | 13,091 | 19,767,41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중동길 42 | 변한규 | |
| | 임야 | 임야 | | | 산29-1 | 7,041 | 7,041 | 10,631,910 | |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02-13 (동인동1가) | 조길래 등 8명 | |
| | 임야 | 임야 | | | 산29-2 | 2,479 | 2,479 | 3,817,66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동 307 | 이성관 | |
| | 임야 | 임야 | | | 산30 | 3,967 | 3,967 | 6,823,24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12-12 | 윤한주 등 3명 | |
| | 임야 | 임야 | | | 산31 | 5,554 | 5,554 | 8,386,54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동 292 | 변칠수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2 (토지) | 임야 | 임야 | 논공읍 | 상리 | 산32 | 5,531 | 5,531 | 9,513,320 | 2024.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62-3 | 이태옥 | 매입 |
| | 임야 | 임야 | | | 산32-1 | 4,767 | 4,767 | 8,199,240 |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425-2 | 윤상순 | |
| | 임야 | 임야 | | | 산32-2 | 809 | 809 | 1,601,82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3-11 | 이정웅 | |
| | 임야 | 임야 | | | 산33 | 15,471 | 15,471 | 26,610,12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 대구광역시 (교육감) | |
| | 임야 | 임야 | | | 산34 | 7,140 | 7,140 | 10,781,40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03 | 석주홍 | |
| | 임야 | 임야 | | | 산35 | 17,851 | 17,851 | 30,346,700 | |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16, 대동상아빌라 A동 101호 | 최병운 최병호 | |

| 연번 | 지목 | | 재산의 표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재지 | | | 일단의 수량 (㎡) | | | | | 주소 | 성명 | |
| 2 (토지) | 임야 | 임야 | 논공읍 | 상리 | 산45-1 | 27,769 | 27,769 | 41,375,810 | 2024.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102동 1002호 | 우종석 우형록 | 매입 |
| | 임야 | 임야 | | | 산45-2 | 27,769 | 27,769 | 52,483,41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0 장원맨션 102-703 | 우정엽 우동엽 | |
| | 임야 | 임야 | | | 1)산208 | 198 | 198 | 909,710 | | | | 국 (농림 축산부) | |
| | 묘지 | 묘지 | | | 2)121 | 66 | 66 | 2,046,00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12-12 | 윤한주 | |
| | 임야 | 임야 | | | 122 | 1,560 | 1,560 | 2,402,40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12-12 | 윤한주 | |

1)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보전녹지지역(70㎡, 909원) 및 자연녹지지역(128㎡, 6610원) 합산
2)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논공읍 하리 278 (31,000원)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3 (건물) | | | 논공읍 | 하리 | 565 | 726.56 | 726.56 | 169,075,110 | 2023.11.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75, 202호 | 토정개발 주식회사 | 매입 |
| | | | | | 565 | 253.8 | 253.8 | 17,512,200 | | | |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4 (토지) | 도로 | 도로 | 하빈면 | 감문리 | 811-3 | 264 | 151.8 | 15,864,770 | 2026. | 3)달서중고 후적지개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15 | 학교법인 달성학원 | 매입 |
| | 도로 | 도로 | | | 812-5 | 63 | 63 | 6,584,200 | | | | | |
| | 도로 | 도로 | | | 813-1 | 169 | 169 | 17,662,360 | | | | | |
| | 대지 | 대지 | | | 813-5 | 2,704 | 2,704 | 870,688,000 | | | | | |
| | 도로 | 도로 | | | 813-6 | 208 | 208 | 21,738,290 | | | | | |
| | 대지 | 대지 | | | 814-2 | 838 | 838 | 247,042,400 | | | | | |
| | 대지 | 대지 | | | 815 | 1,347 | 1,347 | 397,095,600 | | | | | |
| | 대지 | 대지 | | | 816 | 4,908 | 4,908 | 1,580,376,000 | | | | | |
| | 답 | 답 | | | 820-1 | 915 | 915 | 269,742,000 | | | | | |
| | 답 | 답 | | | 820-2 | 569 | 569 | 167,741,200 | | | | | |
| | 답 | 답 | | | 820-3 | 515 | 515 | 151,822,000 | | | | | |
| | 묘지 | 묘지 | | | 821 | 553 | 553 | 163,024,400 | | | | | |
| | 전 | 전 | | | 823-1 | 21 | 21 | 2,496,900 | | | | | |
| | 답 | 답 | | | 824 | 1,297 | 1,297 | 382,355,600 | | | | | |
| | 답 | 답 | | | 825-1 | 2,067 | 2,067 | 671,568,300 | | | | | |
| | 답 | 답 | | | 826-1 | 327 | 327 | 105,294,000 | | | | | |
| | 도로 | 도로 | | | 827-3 | 60 | 60 | 6,270,660 | | | | | |
| | 도로 | 도로 | | | 828-4 | 79 | 79 | 8,256,370 | | | | | |
| | 학교 용지 | 학교 용지 | | | 929-2 | 218 | 218 | 65,574,400 | | | | | |

3) 3)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하빈면 감문리 565-1(316,700원) * 0.33배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5 (건물) | | | 하빈면 | 감문리 | 815 | 7,446.54 | 7,446.54 | 2,280,263,220 | 2026. | 달서중고 후적지개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15 | 학교법인 달성학원 | 매입 |
| | | | | | 810-2 | | | | | | | | |
| | | | | | 811-3 | | | | | | | | |
| | | | | | 812-2 | | | | | | | | |
| | | | | | 812-5 | | | | | | | | |
| | | | | | 813-1 | | | | | | | | |
| | | | | | 813-3 | | | | | | | | |
| | | | | | 813-5 | | | | | | | | |
| | | | | | 813-6 | | | | | | | | |
| | | | | | 814-1 | | | | | | | | |
| | | | | | 814-2 | | | | | | | | |
| | | | | | 816 | | | | | | | | |
| | | | | | 820-1 | | | | | | | | |
| | | | | | 820-2 | | | | | | | | |
| | | | | | 820-3 | | | | | | | | |
| | | | | | 821 | | | | | | | | |
| | | | | | 824 | | | | | | | | |
| | | | | | 825-1 | | | | | | | | |
| | | | | | 825-3 | | | | | | | | |
| | | | | | 826-1 | | | | | | |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기준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명 | |
| 5 (건물) | | | 하빈면 | 감문리 | 826-2 | 7,446.54 | 7,446.54 | 2,280,263,220 | 2026. | 달서중고 후적지개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15 | 학교법인 달성학원 | 매 입 |
| | | | | | 827-3 | | | | | | | | |
| | | | | | 828-2 | | | | | | | | |
| | | | | | 828-4 | | | | | | | | |
| | | | | | 920-9 | | | | | | | | |
| | | | | | 929-2 | | | | | | | | |
| | | | | | 929-4 | | | | | | | | |
| 6 (건물) | | | 다사읍 | 매곡리 | 919-2 | 2,472.5 | 313.2 | 1,689,000,000원 | 2024.12. | 달성군북부 노인복지관 수직증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 달성군 | 증축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7 (토지) | 대 | 대 | 논공읍 | 남리 | 1108 | 316 | 316 | 123,366,400 | 2023.12. | 거점공간 (다담센터)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 | 재단법인 논공효천 장학회 | 매입 |
| 8 (토지) | 대 | 대 | 논공읍 | 북리 | 824-20 | 491 | 491 | 341,441,400 | |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219 | 임영택 | |
| 9 (건물) | | | 논공읍 | 남리 | 1108 | 187.22 | 187.22 | 43,673,900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 | 재당법인 논공효천 장학회 | 지하 1층 |
| | | | | | | 775.21 | 775.21 | 218,369,500 | | | | | 지상 1~5층 |
| 10 (건물) | | | | 북리 | 824-20 | 227.2 | 227.2 | 44,758,400 | |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219 | 임영택 | 주택 |
| | | | | | | 131.19 | 131.19 | 25,844,430 | | | | | 소매점 |
| 11 (토지) | 답 | 답 | 현풍읍 | 원교리 | 116번지 | 1,702 | 1,702 | 958,226,000 | 2024.3. |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16 | 김용국 | 매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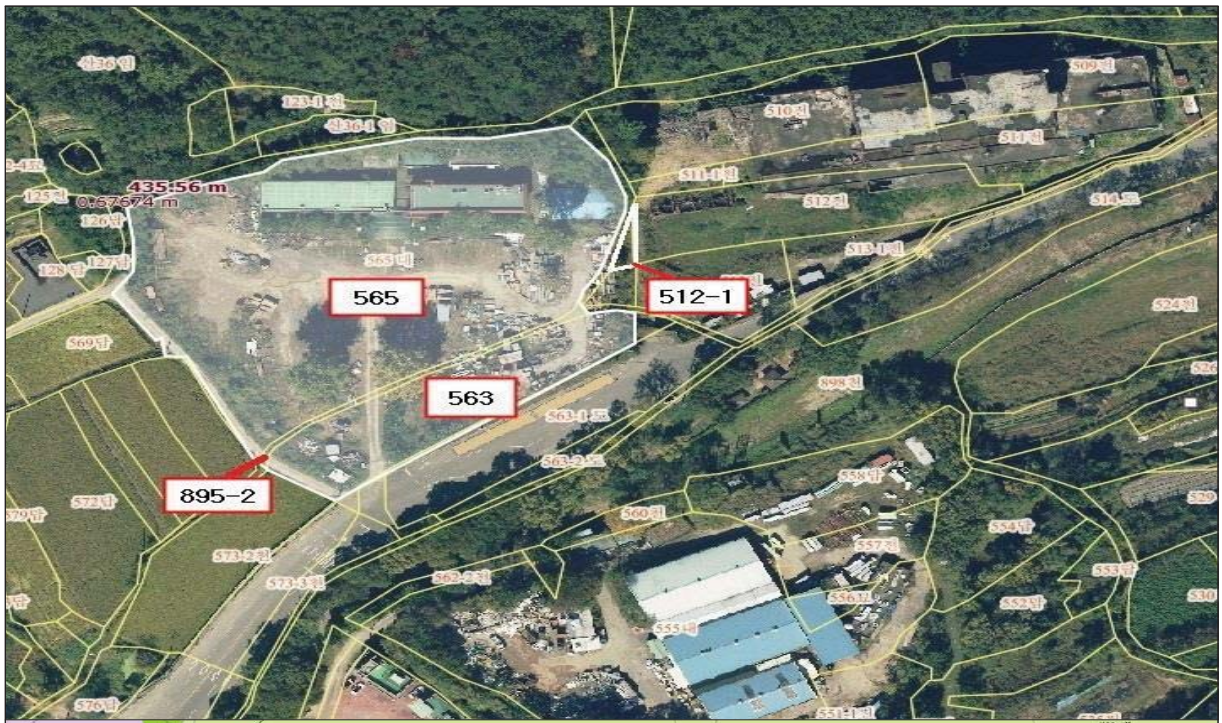
#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 취소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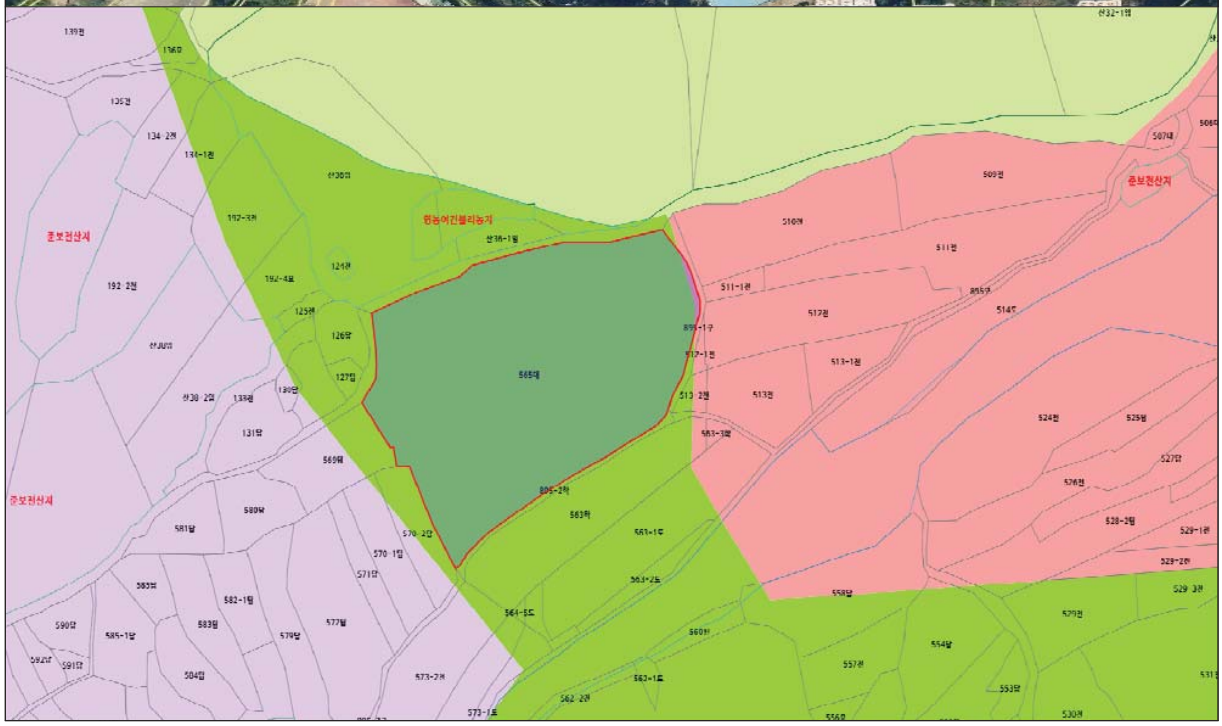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총 계 | | | 1필지 | | | | | | | | | | |
| 1 (건물) | | | 현풍읍 | 성하리 | 228-32 | 44,547 | 1,200 | 3,000,000,000 | 2024.10. | 다목적체육관 증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달성군 | 취득 취소 |

# 위 치 도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565일원



#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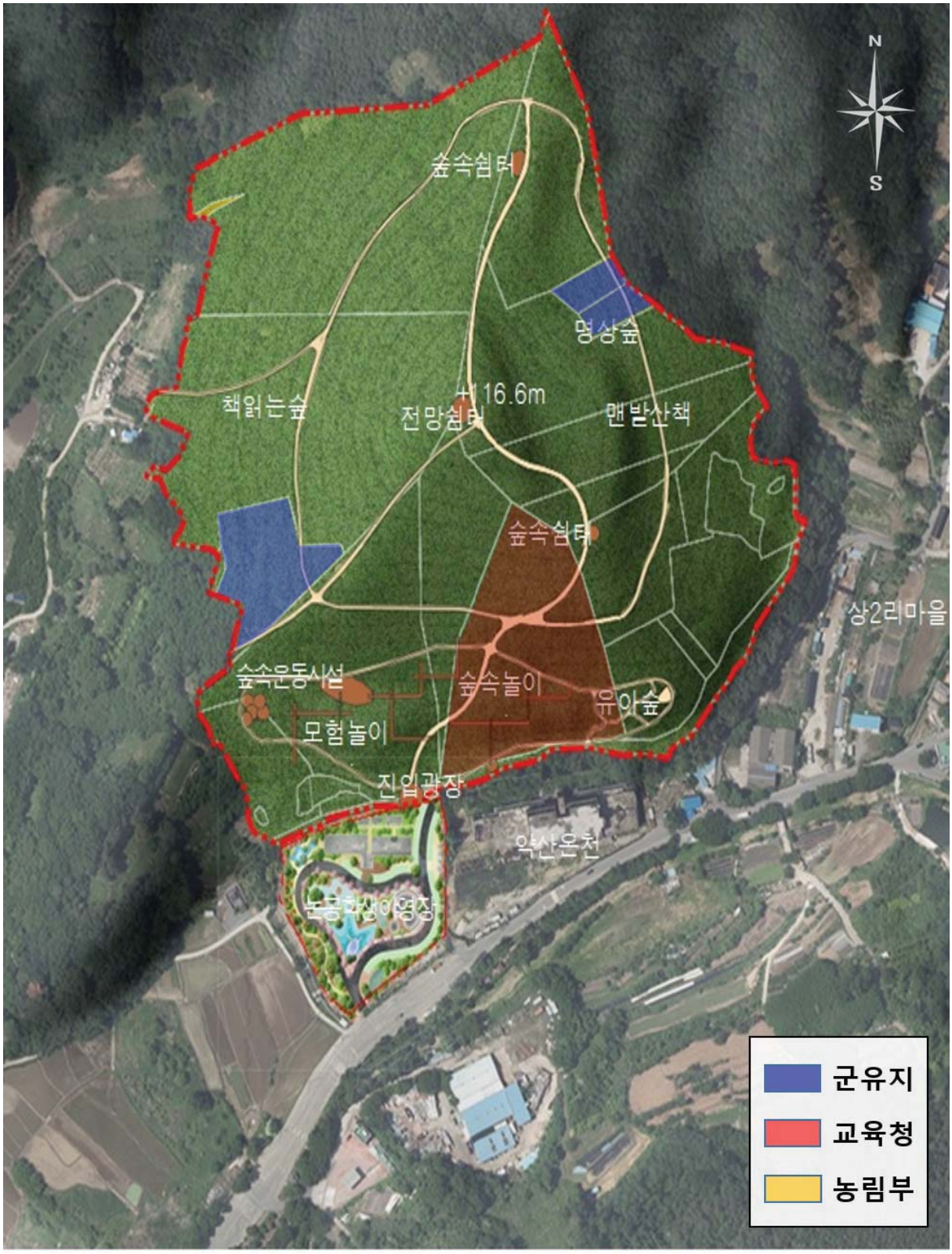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조감도 – 창작캠핑장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조감도 - 산림휴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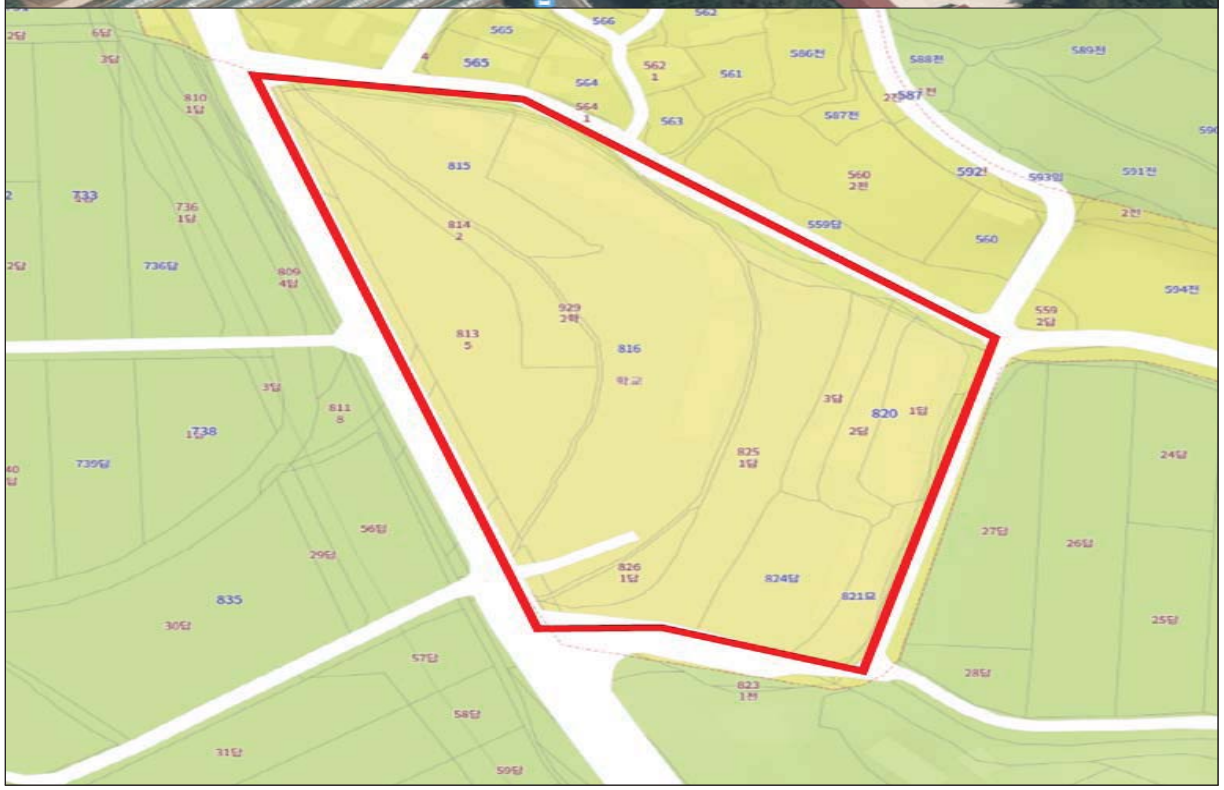


# 위 치 도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15 일원 (달서중고등학교)



# 위 치 도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 현 장 사 진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 위 치 도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108번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20번지



# 현 장 사 진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10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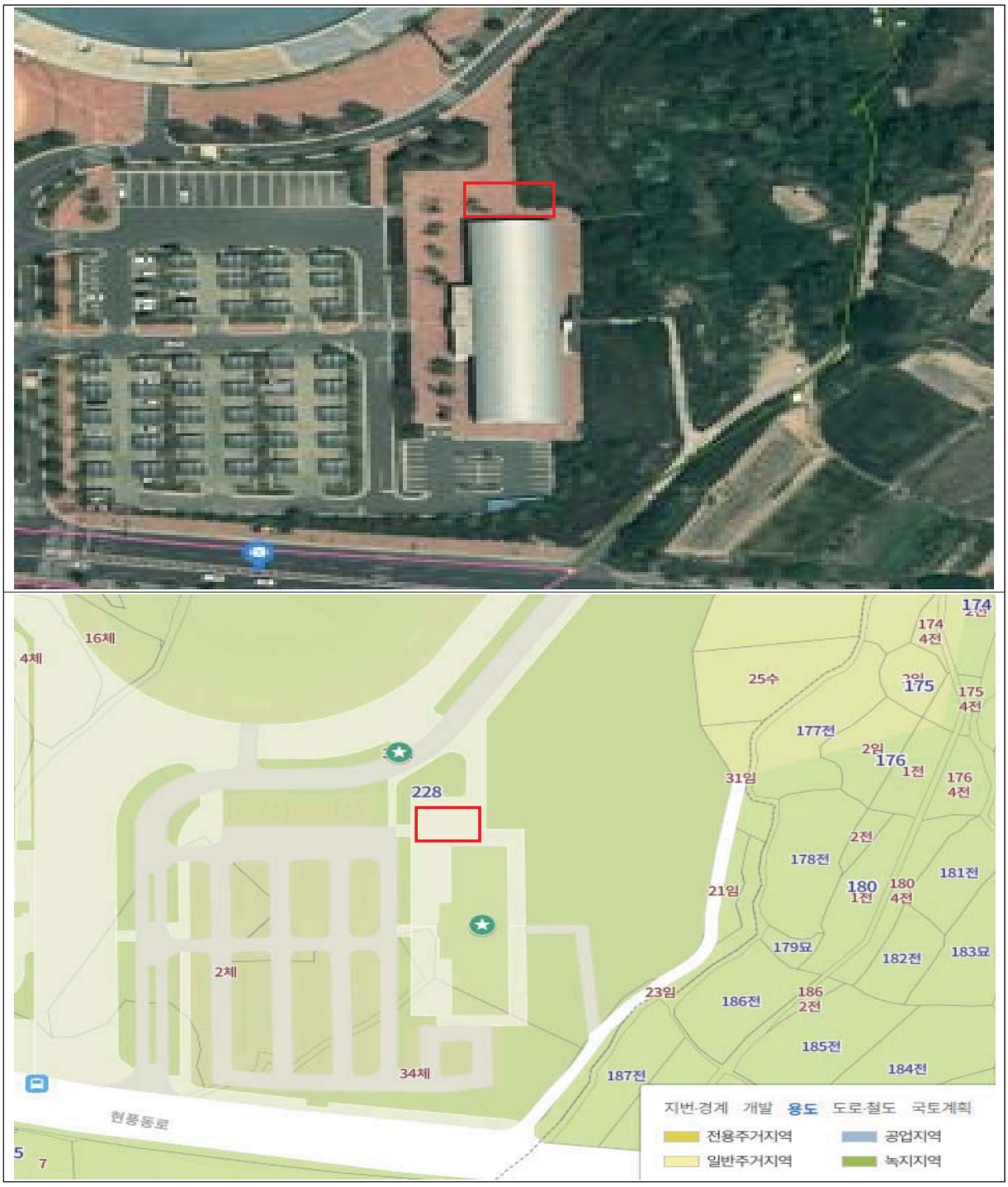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20번지



# 위 치 도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 현 장 사 진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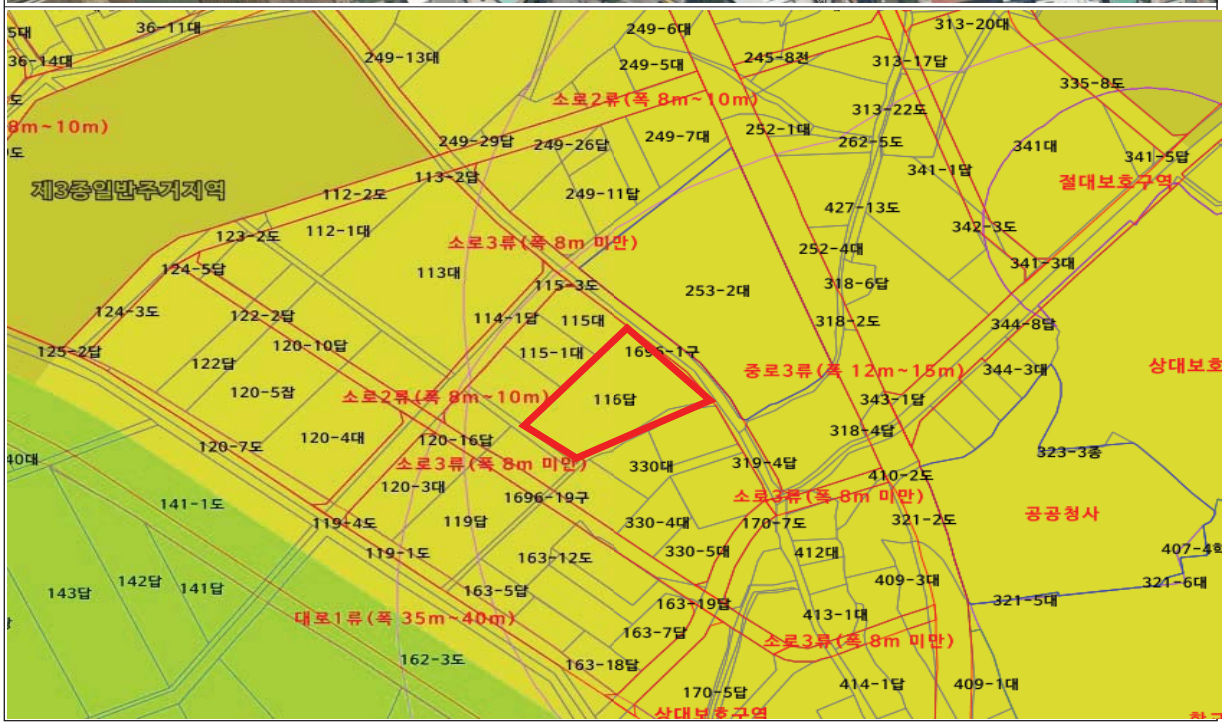


# 위 치 도

##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16번지



# 현 장 사 진

##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16번지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노인 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및 기능)

## 6. 검토의견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 개발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흉물로 남아있던 (구)논공 학생야영장 부지 11,506㎡, 건축연면적 979㎡의 지상 2층 건물을 활용하여 창작캠핑장을 조성하고, 학생야영장 부지 뒤편 임야 158,121㎡를 활용하여 캠핑장과 연계한 산림휴양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 하빈 감문리 일원의 대구교도소 이전 님비(NIMBY)현상 등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벗어나고 있고,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달서중고 후적지 17,009㎡, 연면적 7,446㎡의 건물을 매입·개발해,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향유를 위한 커뮤니티센터와 기존 관광지의 연계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 다사·하빈 지역의 지속적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회원수도 매년 13% 가량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상승에 부응해 복지관을 증축하여 노인 여가 및 건강증진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희망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과 유동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논공 일대의 불법주차 해결 등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경관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논공읍 남리 1108번지, 북리 824-20번지를 매입하여 거점공간(다담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해 문화향유 및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취소**

-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증설 공약사업으로 2023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올해 7월 다목적체육관 내 증축·개선 등에 대한 종목별 협회 및 이용 클럽별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시설 증축보다는 샤워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환경개선 요구가 많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당초 증축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 달성군보건소의 주차 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한 원교리 116번지 1,702㎡를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보건소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야간에는 마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9.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삭제)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 노인 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재가 노인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알선사업
5.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사업
6. 노약자 등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출연금 변경내용 : 3억 원 증액(당초 10억 원 → 변경 13억 원)

※ 보증규모 : 30억 원 증액(출연금의 10배)

※ 그 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영 현황

- 출 연 금 : 10억 원(보증한도 100억 원)
- 접수기간 : 2023. 5. 24. ~ 8. 3.(접수마감)
- 보증건수 : 395건 9,305백만 원
  - 일 반 특례보증 : 387건 / 9,265백만 원
  - 저신용 특례보증 : 8건 / 40백만 원

- 대출실행 세부내역

| 구 분 | | 내 역 |
|---|---|---|
| 등급별 | 일 반 | 1등급(40.6%), 2등급(18.6%), 3등급(11.9%), 4등급(18.3%) 5등급(6.7%), 6등급(2.3%), 7등급(1.6%) |
| | 저신용 | 6등급(25%), 7등급(62.5%), 8등급(12.5%) |
| 지역별 | 일 반 | 다사읍(20.9%), 화원읍(19.6%), 논공읍(14.5%), 옥포읍(11.6%) 현풍읍(11.1%), 그 외 10% 미만 |
| | 저신용 | 다사읍(50%), 현풍읍(25%), 논공읍(12.5%), 하빈면(12.5%) |
| 업종별 | 일 반 | 숙박 및 음식업점(27.6%), 도매·소매업(23.5%), 제조업(10.3%) 그 외 10% 미만 |
| | 저신용 | 숙박 및 음식업점(50%),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5%) 도매·소매업(12.5%), 교육서비스업(12.5%) |

## 5.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안으로

○ 출연금을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 3억 원 증액으로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추가 출연금 3억 원의 10배수에 해당하는 보증 규모 30억 원에 대해 2023년 9월 업무협약 변경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특례보증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당초 목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출연기관 현황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연<br>대상</td><td>○ 기 관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br>○ 대 표 : 황 병 욱<br>○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td></tr>
<tr><td>출연<br>사업비</td><td>○ 추가출연 예정금액 : 300백만 원(1,000백만 원→1,300백만 원)<br>○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br>(단위: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사업기간</th><th>예산액</th><th>2023<br>2차추경<br>요구액</th><th>2023<br>1차추경<br>요구액</th></tr>
<tr><td>합 계</td><td>-</td><td>1,300</td><td>300</td><td>1,000</td></tr>
<tr><td>기본재산</td><td>9월 ~ 자금소진시</td><td>1,300</td><td>300</td><td>1,000</td></tr>
</table>
※ 출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원으로 조성</td></tr>
<tr><td>출연<br>필요성</td><td>○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함</td></tr>
<tr><td>근거<br>법령</td><td>○「지방재정법」 제18조<br>○「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br>○「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td></tr>
<tr><td>사업<br>부서<br>의견<br>(총평)</td><td>○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00백만원의 추가출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td></tr>
</table>

# 출연기관 현황

<table>
<tr><td>기관명</td><td colspan="6">대구신용보증재단</td><td colspan="6">전화번호 : 053-560-6300<br>홈페이지 : www.ttg.co.kr</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12">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td></tr>
<tr><td>설립근거</td><td colspan="12">○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br>○ 시 행 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br>○ 조　　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설립일자</td><td colspan="12">○ 설립일자 : 1996. 11. 7.</td></tr>
<tr><td>조직인력</td><td colspan="12">○ 2본부 3부 7영업점 2실 1센터 / 99명</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12">○ 신용보증<br>○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br>○ 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br>○ 구상권의 행사<br>○ 기본재산 관리<br>○ 국가,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td></tr>
<tr><td rowspan="3">보증현황<br>(건, 백만원)</td><td colspan="2">총보증공급(누적, '23.8.31.)</td><td colspan="2">보증잔액('23.8.31.)</td><td colspan="2">2023년 보증공급('23.8.31.)</td></tr>
<tr><td>건수</td><td>금액</td><td>건수</td><td>금액</td><td>건수</td><td>금액</td></tr>
<tr><td>570,643</td><td>14,446,211</td><td>126,517</td><td>2,294,807</td><td>46,689</td><td>1,179,235</td></tr>
<tr><td rowspan="3">기본재산<br>(백만원)</td><td rowspan="2">총<br>기본재산<br>('23.8.31)</td><td colspan="4">설립당시 기본재산</td><td colspan="5">증감 기본재산</td><td rowspan="2">자치단체출연<br>기본재산<br>(기초포함)</td></tr>
<tr><td>소계</td><td>시</td><td>정부</td><td>기타</td><td>소계</td><td>시</td><td>구군청</td><td>정부</td><td>기타</td></tr>
<tr><td>435,685</td><td>51,427</td><td>25,000</td><td>10,500</td><td>15,927</td><td>384,257</td><td>139,543</td><td>5,280</td><td>74,002</td><td>165,433</td><td>169,823<br>(39.0%)</td></tr>
<tr><td rowspan="3">재무현황<br>(백만원)</td><td colspan="3">자산('22.12.31.)</td><td colspan="3">부채('22.12.31.)</td><td colspan="6" rowspan="2">자본('22.12.31.)</td></tr>
<tr><td>계</td><td>유동자산</td><td>비유동자산</td><td>계</td><td>유동부채</td><td>비유동부채</td></tr>
<tr><td>325,810</td><td>223,063</td><td>102,747</td><td>73,902</td><td>35,499</td><td>38,403</td><td colspan="6">251,908</td></tr>
</table>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전문개정 2011. 4. 14.]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추가(변경) 출연금액: 328백만 원

- 2023년 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312백만 원
  • 농협 300백만 원, 대구은행 12백만 원 ⇒ 기본재산 적립
-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 출연 : 16백만 원
  • 기본운영비 14백만 원, 진로진학 지원사업비 2백만 원

☞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달성군 교육경쟁력 강화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2023년도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등 출연금 변경액 3억2천8백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2023년도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천2백만 원으로, 3억1천2백만 원과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천4백만 원, 진로진학 지원 사업비 2백만 원으로 1천6백만 원 총 3억2천8백만 원이며

○ 본 출연금 중 협력사업비 3억1천2백만 원은 (재)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프로그램유지 보수 등 증액분과 진로진학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연<br>대상</td><td>○ 기 관 명 : (재)달성교육재단<br>○ 대　　표 : 최 재 훈<br>○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td></tr>
<tr><td>출연<br>사업비</td><td>○ 추가출연 예정금액 : 328백만 원(2,062백만 원⇒2,390백만 원)<br>○ 예산편성 요구 변경사항<br>(단위: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사업기간</th><th>예산액</th><th>2023<br>2차추경<br>요구액</th><th>2023<br>1차추경<br>요구액</th></tr>
<tr><td>합　계</td><td></td><td>5,037</td><td>2,390(증328)</td><td>2,062</td></tr>
<tr><td>인력운영비</td><td>7~12월</td><td>141</td><td>141</td><td>141</td></tr>
<tr><td>기본운영비</td><td>7~12월</td><td>333</td><td>283(증 14)</td><td>269</td></tr>
<tr><td>기본재산 적립</td><td>1~12월</td><td>312</td><td>312(증 312)</td><td>-</td></tr>
<tr><td>목적사업준비금</td><td>1~12월</td><td>986</td><td>-</td><td>-</td></tr>
<tr><td>장학사업</td><td>7~12월</td><td>513</td><td>-</td><td>-</td></tr>
<tr><td>진로진학사업</td><td>7~12월</td><td>70</td><td>70(증 2)</td><td>68</td></tr>
<tr><td>글로벌 교육지원</td><td>7~12월</td><td>1,564</td><td>1,564</td><td>1,564</td></tr>
<tr><td>평생학습도시 조성</td><td>7~12월</td><td>20</td><td>20</td><td>20</td></tr>
<tr><td>군립도서관 운영</td><td>7~12월</td><td>1,098</td><td>-</td><td>-</td></tr>
</table>
※ 군립도서관 운영비 증액분(17백만 원)는 보조금으로 별도 교부</td></tr>
<tr><td>출연<br>필요성</td><td>○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달성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br>○ 군민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td></tr>
<tr><td>근거<br>법령</td><td>○「지방재정법」 제18조<br>○「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br>○「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td></tr>
<tr><td>사업<br>부서<br>의견<br>(총평)</td><td>○ 민선8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br>○ 기존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가능<br>○ 맞춤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td></tr>
</table>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3년 출연금 328백만 원 추가 교부로 재단 운영 및 기본재산 적립

- 협력사업비 312백만 원 기본재산 적립
- 기본운영비 14백만 원, 진로진학 지원사업 2백만 원 증액

##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 | | 2023년 1차 추경 출연액 (A) | 1차추경 대비 증감액 (B-A) |
|---|---|---|---|---|---|
| | 재단 예산액 | 재단 요구액 | 부서 검토액 (B) | | |
| 총 계 | 5,037 | 2,390 | 2,390 | 2,062 | 328 |
| 재단운영비 | 786 | 736 | 736 | 410 | |
| 인력운영비 | 141 | 141 | 141 | 141 | - |
| 기본운영비 | 333 | 283 | 283 | 269 | 14 |
| 기본재산 적립 | 312 | 312 | 312 | - | 312 |
| 자체사업비 | 3,153 | 1,654 | 1,654 | 1,652 | |
| 장학사업 | 513 | - | - | - | - |
| 진로진학 사업 | 70 | 70 | 70 | 68 | 2 |
| 글로벌 교육지원 | 1,564 | 1,564 | 1,564 | 1,564 | - |
| 평생학습도시 지원 | 20 | 20 | 20 | 20 | - |
| 목적사업준비금 | 986 | - | - | - | |
| 위탁사업비 | 1,098 | - | - | - | - |
| 군립도서관 운영 | 1,098 | - | - | - | - |

# 출연기관 현황

| 기관명 | (재)달성교육재단 | 전화번호 | 053.644.9683 |
|---|---|---|---|
| | | 홈페이지 | www.dsjanghak.or.kr |
|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br>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주요연혁 | 2000. 4. 4. 등기 | | |

| 임원(17)<br>(23.8.1. 현재)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임기 |
|---|---|---|---|---|
| | 이사장 | 최재훈 | 달성군수 | 재임기간 |
| | 대표이사 | 이희갑 | 前 대구미래교육원 원장 | 2023.8.1.~2027.7.31 |
| | 비상임이사 | 나상권 | 달성군 교육복지국장 | 재임기간 |
| | 비상임이사 | 송정근 | 농협달성군지부 지부장 | 재임기간 |
| | 비상임이사 | 이대현 | 하빈면 체육회장 | 2021.1.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신창섭 | 자영업 | 2021.1.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곽두섭 | 前 유가농협장 | 2021.1.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석재추 | 前 옥포읍번영회장 | 2023.7.10~2027.7.9 |
| | 비상임이사 | 조성래 | 논공읍 체육회 이사 | 2021.1.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홍진웅 | 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 | 2021.1.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최상국 | 前 달성군의회 의원 | 2023.8.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심경용 | 前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 | 2023.8.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백윤태 | 구지면 장학회 이사 | 2023.8.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김우식 | 달성군 체육회 이사 | 2023.8.1~2024.12.31 |
| | 비상임이사 | 이진규 | 달성군 체육회 이사 | 2023.8.1~2027.7.31 |
| | 감사 | 김대근 | 세무법인 양정 세무사 | 2023.8.1~2025.7.31 |
| | 감사 | 윤종민 | 달성군 회계과장 | 재임기간 |

| 주요기능 | ○ 달성군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br>○ 각종 교육지원 사업 수행<br>○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 최근3년간 예산현황<br>(단위: 백만원) | 연 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 기본재산 | 31,404 |
|---|---|---|---|---|---|---|---|
| | 예산액 | 5,065 | 4,070 | 4,499 | | 보통재산 | 562 |
| | 지자체 지원액 | **4,310** | **3,260** | **3,512** | | | |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의 출연금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 : 3,000천 원 감
- (당초) 금4,400천 원→(변경) 금1,400천 원
○ 기부금 수입 변경 : 185,610천 원 감
- (당초) 금220,000천 원 →(변경) 금34,390천 원
○ 기타회계 전입금 신설 : 35,610천 원 증
○ 예치금 변경 : 153,000천 원 감
- (당초) 금224,400천 원 →(변경) 금71,400천 원

5.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6. 검토의견

○ 본 기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올해 기부금 모금 첫 해로 대구시 정책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연간 기부 추정액을 2억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추이에 맞게 7천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기금운용계획서(변경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기금운용계획서(변경안)**

#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 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
(3) 설치년도 : 202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기부자의 답례품 제공, 기부금 활용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도모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부금 모금, 접수에 따른 답례품 제공,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 2023년도 조성계획 | | | 2023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
|---|---|---|---|---|---|
| | 수입 ⓑ | 지출 ⓒ | 증감 ⓓ = ⓑ - ⓒ | | |
| 0 | 71,400 | 0 | 71,400 | 71,400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2023년도 말<br>조성액 ⓐ | 융자금<br>미회수채권 ⓑ | 지역개발채권<br>미상환잔액 ⓒ | 총 조성규모<br>ⓓ=ⓐ+ⓑ-ⓒ |
|---|---|---|---|
| 71,400 | 0 | 0 | 71,400 |

(2) 재원조성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으로 조성

(3) 지원기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4) 지원대상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복리증진 사업추진 지원

#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 수입계획 | | | | 지출계획 | | | |
|---|---|---|---|---|---|---|---|
| 항목 | 수입액 | 기정액 | 증감 | 항목 | 지출액 | 기정액 | 증감 |
| 합계 | 71,400 | 224,400 | △153,000 | 합계 | 71,400 | 224,400 | △153,000 |
| 전입금 | 35,610 | 0 | 35,610 | 비융자성사업비 | 0 | 0 | 0 |
| 보조금 | 0 | 0 | 0 | 융자성사업비 | 0 | 0 | 0 |
| 차입금 | 0 | 0 | 0 | 인력운영비 | 0 | 0 | 0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0 | 0 | 0 | 기본경비 | 0 | 0 | 0 |
| 예탁금원금회수 | 0 | 0 | 0 | 예탁금 | 0 | 0 | 0 |
| 예치금회수 | 0 | 0 | 0 | 예치금 | 71,400 | 224,400 | △153,000 |
| 예수금 | 0 | 0 | 0 | 차입금원리금상환 | 0 | 0 | 0 |
| 이자수입 | 1,400 | 4,400 | △3,000 | 예수금원리금상환 | 0 | 0 | 0 |
| 기타수입 | 34,390 | 220,000 | △185,610 | 기타지출 | 0 | 0 | 0 |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 장·관·항·목 | 수입액 | 기정액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200 세외수입 | 35,790 | 224,400 | △188,610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1,400 | 4,400 | △3,000 | |
| 216 이자수입 | 1,400 | 4,400 | △3,000 | |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1,400 | 4,400 | △3,000 | |
| | | | | ○ 공공예금이자수입<br>경정 1,400,000원 - 기정 4,400,000원 = △3,000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34,390 | 220,000 | △185,610 | |
| 224 기타수입 | 34,390 | 220,000 | △185,610 | |
| 224-03 기부금수입 | 34,390 | 220,000 | △185,610 | |
| | | | | ○ 기부금 수입<br>경정 34,390,000원 - 기정 220,000,000원 = △185,610 |
|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35,610 | 0 | 35,610 | |
| 720 내부거래 | 35,610 | 0 | 35,610 | |
| 721 전입금 | 35,610 | 0 | 35,610 | |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 35,610 | 0 | 35,610 | |
| | | | | 35,609,100원 = 35,610 |
| 수 입 합 계 | 71,400 | 224,400 | △153,000 | |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 지출액 | 기정 지출액 | 비교증감 |
|---|---|---|---|
| 자치행정과 | 71,400 | 224,400 | △153,000 |
| 기타 | 71,400 | 224,400 | △153,000 |
| 재무활동(자치행정과) | 71,400 | 224,400 | △153,000 |
|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고향사랑기금) | 71,400 | 224,400 | △153,000 |
|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 71,400 | 224,400 | △153,000 |
| 602 예치금 | 71,400 | 224,400 | △153,000 |
| 01 일반예치금 | 71,400 | 224,400 | △153,000 |
| ○ 일반예치금 경정 71,400,000원 - 기정 224,400,000원 = △153,000 | | | |
| 지 출 합 계 | 71,400 | 224,400 | △153,000 |

# 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 연도별 | 조성액 | | | | | | | | 집행액 | | | | | | | 잔액 (ⓐ-ⓑ) |
|---|---|---|---|---|---|---|---|---|---|---|---|---|---|---|---|---|
| | 계 ⓐ | 전입금 | 보조금 | 차입금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예수금 | 이자수입 | 기타수입 | 계 ⓑ | 비융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 비 | 차입금원 리금상환 | 예수금원 리금상환 | 기타지출 | |
| 2017년 까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년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9년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0년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1년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2년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3년도 | 71,400 | 35,610 | 0 | 0 | 0 | 0 | 1,400 | 34,390 | 0 | 0 | 0 | 0 | 0 | 0 | 0 | 71,400 |
| 계 | 71,400 | 35,610 | 0 | 0 | 0 | 0 | 1,400 | 34,390 | 0 | 0 | 0 | 0 | 0 | 0 | 0 | 71,400 |

#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3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3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 구분 | 예치(탁)처 | 예치 및 예탁액 | | | | 비고 |
|---|---|---|---|---|---|---|
| | | 2021년도말현재액 | 2022년도말현재액ⓐ | 2023년도말현재액ⓑ | 증감(ⓑ-ⓐ) | |
| 합계 | | 0 | 0 | 71,400 | 71,400 | |
| 예치금 | 소계 | 0 | 0 | 71,400 | 71,400 | |
| | 농협은행 | 0 | 0 | 71,400 | 71,400 | |

##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 · 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3. 07. 0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

##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1** 관련 공문

※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605(2023. 7. 17.)]
※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20(2023. 7. 20.)]
※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597(2023. 7. 20.)]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

## 1 추진 배경

○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
| 세종 | 세종시 | -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2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 ❶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 ❷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❸ 감면 내용

○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 세 목 | | 부과대상 | 납기 | 소관 지자체 |
|---|---|---|---|---|
| ① | 주 민 세 개 인 분* | • 사망자 · 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br>*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 8월 | 특 · 광역시, 시 · 군 |
| | 자동차세 소 유 분 | • 사망자 · 유가족 소유 자동차 | 6월, 12월 | 특 · 광역시, 시 · 군 |
| | 재 산 세 | • 사망자 · 유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 7월, 9월 | 시 · 군 · 구 |
| ② | 지역자원 시 설 세* | • 사망자 · 유가족 * 소방분 限 | | 특 · 광역시, 도 |
| ③ | 취 득 세 |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 특 · 광역시, 도 |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u>**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u>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u>**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u>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u>**취득세**</u>

## 3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 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 | → | 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 | → | ③ 의회의결 | → | 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 | → | ⑤ 감면 지원 |
|---|---|---|---|---|---|---|---|---|
| 행안부 | | 개발원 | | 全 지자체 | | 개발원→지자체 | | 해당 지자체 |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 ·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 · 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총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이하 |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8월 25일

2.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국방개혁 기본계획(′ 12.~′ 30.)」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운영되면서 대구 지역예비군대원은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게 됨.

○ 이에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지역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5. 관계법령

○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12.~′ 30.)」에 따라 권역별로 여단 단위로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운영되면서 대구 지역예비군 대원은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게 됨.

○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성군 관내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에게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입소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예비군법(법률)」(2022.12.13. 일부개정, 2023.6.14. 시행)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14조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2023.6.7. 일부개정, 2023.6.14. 시행)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1.10.25. 타법개정·시행)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 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 · 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 · 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 · 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 · 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 · 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 · 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 수송 · 통신 · 의료 · 장비 · 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 · 수송 · 통신 · 의료 · 장비 · 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 · 선박의 확보와 인원 · 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 · 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 · 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 · 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 · 관 · 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 · 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 · 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6. 11.)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의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88조 → 제88조의2

○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 삭제

○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거 법령에 명시된 위원의 구성 요건 반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5.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1조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변경 또는 조정”을 “변경,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 이상으로”를 “6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하는 국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공무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조(기능) ----------. |
|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 1. --------- 변경, 폐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도로,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등 시설물과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 <삭 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① ---------- 10명 ----------. ---------- 6명 이내로----------. |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 ② ---------- 담당하는 과장-------.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
| 1.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 1. 관계공무원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3. 6. 11. 개정)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23. 6. 11. 개정)

**제88조의2(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 · 군 · 구 지명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제5조제6호 ‘무료 순환버스 운영’의 삭제

○ 안 제9조의2에 감염병 환자, 타인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사람, 기타 센터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사용·이용 제한 내용 신설

○ 안 제13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액 구체적 명시

○ 안 [별표1] 사물함 이용 요금 구체적 명시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회의실’ 삭제 등

○ 안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 5.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회의실(전시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회의실(전시실)”을 “전시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 : 원)

| 구분 | | 성인 (만19세이상) | | | 중.고생 (만13~만18세) | |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 | 아쿠아로빅 | | 1일 입장 요금 | | |
|---|---|---|---|---|---|---|---|---|---|---|---|---|---|---|---|
| 수영장 | 이용요금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5회 | 주3회 | 주2회 | 주3회 | 주2회 | 성인 | 중고생 | 유아초등 |
| | | 77,000 | 54,000 | 39,000 | 69,000 | 50,000 | 39,000 | 64,000 | 46,000 | 33,000 | 54,000 | 39,000 | 3,200 | 2,200 | 1,600 |
| 헬스장 | 이용요금 | 50,000 | | | | | | | | |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 | | | | | | | | | | | | |
| 비고 | |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br>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 | | | | | |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시간

| 구 분 | 평일(월~금) | 토요일 | 공휴일 | 일요일 |
|---|---|---|---|---|
| 수 영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전관휴관 |
| 헬 스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
|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달성문화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 | |

###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공연장(백년홀) | 오 전 | 30,000 | |
| | 오 후 | 50,000 | |
| | 야 간 | 70,000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전시실(백년갤러리) | 1일 | 30,000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설 비 명 |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피아노 | | 1회 | 30,000 | |
| 무대조명 | | 1회 | 25,000 | |
| 음향 | 유선마이크 | 1회 | 개당 5,000 | |
| | 무선마이크 | 1회 | 개당 10,000 | |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 | CD 플레이어 | 1회 | 10,000 | |
| 무대시설 | 보면대 | 1회 | 10,000 | |
| | 의자 | 1회 | 10,000 | |
| 냉·난방 | 공연장 | 1회 | 80,000 | |
| | 전시실 | 1일 | 30,000 | |
| | 삭제 | - | - |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이내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
| 1. "센터 시설"이란 문화강좌실, 공연장, **회의실(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1. ----------**전시공간**----------.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업무)** (현행과 같음) |
| 6. **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 6. **삭제** |
|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
| **제7조(대관의 범위)**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대관의 범위)** (현행과 같음) |
|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실(전시실)** 등과 그 부속시설 |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등과 그 부속시설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br>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br>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br>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③ (생략)

1. (생략)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

3. ~ 4. (생략)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 구분 | | 성인 (만19세이상) | 중.고생 (만13~만18세)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아쿠아 로빅 | 1일 입장 요금 | 비고 |
|---|---|---|---|---|---|---|---|
| 수영장 | 이용요금 | 생략 | | | | | 생략 |
| 헬스장 | 이용요금 | 생략 |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00원 |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 구분 | | 성인 (만19세이상) | 중.고생 (만13~만18세) |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 아쿠아 로빅 | 1일 입장 요금 |
|---|---|---|---|---|---|---|
| 수영장 | 이용요금 | 생략 | | | | |
| 헬스장 | 이용요금 | 생략 | | | | |
| 사물함 | 이용요금 |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 | | | |
| 비고 | |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br>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 | | |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시간

| 구 분 | 평일(월~금) | 토요일 | 공휴일 | 일요일 |
|---|---|---|---|---|
| 수 영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전관휴관 |
| 헬 스 | 06:00~22:00 | 06:00~18:00 | 09:00~18:00 | |
|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달성문화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 가. 대 관 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공연장(백년홀) | 오 전 | 30,000 | |
| | 오 후 | 50,000 | |
| | 야 간 | 70,000 | |
| 회의실 | 오 전 | 30,000 | |
| | 오 후 | 30,000 | |
| | 야 간 | 50,000 | |
| 전시실(백년갤러리) | 1일 | 30,000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설비명 |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피아노 | | 생략 | | |
| 무대조명 | | | | |
| 음향 | 유선마이크 | | | |
| | 무선마이크 | | | |
| | 빔프로젝트 | | | |
| | CD플레이어 | | | |
| 무대시설 | 보면대 | | | |
| | 의자 | | | |
| 냉·난방 | 공연장 | | | |
| | 전시실 | | | |
| | 회의실 | 1회 | 40,000 | |

※ 생략

## 개 정 안

###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 가. 대 관 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공연장(백년홀) | 오 전 | 30,000 | |
| | 오 후 | 50,000 | |
| | 야 간 | 70,000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전시실(백년갤러리) | 1일 | 30,000 |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설비명 |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피아노 | | 현행과 같음 | | |
| 무대조명 | | | | |
| 음향 | 유선마이크 | | | |
| | 무선마이크 | | | |
| | 빔프로젝트 | | | |
| | CD플레이어 | | | |
| 무대시설 | 보면대 | | | |
| | 의자 | | | |
| 냉·난방 | 공연장 | | | |
| | 전시실 | | | |
| | 삭제 | - | - | |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 개 정 안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7.30., 2018.5.21., 2019.2.28., 2021.12.10., 2022.6.30., 2023.4.1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7.30., 2016.10.31., 2018.5.2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시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신설 2017.8.10.>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7호에서 이동 (2017.8.10.)>

**참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별표3”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가.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 이용료 할인 : 30,000원 × 100명 × 12월 = 36,000,000원

※ 달성문화센터 이용객 중 다자녀 가정의 이용객 수의 집계가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할인금액 산정 불가능

##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가창체육공원 풋살 전용구장 및 기존 풋살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미반영 체육시설을 추가 및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제14조제1항제8호 사용료 감면율 조정

-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 → 80% 이내

○ 안 별표 1(명칭 및 위치) 현행화

○ 안 별표 2(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개정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창체육공원 풋살 전용구장 및 기존 풋살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 미반영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전액”을 “80%이내”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주요 시설 |
|---|---|---|
| 국민체육센터 |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
| 군민운동장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
| 군민체육관 |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
| 논공축구장 |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
| 구지축구장 |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 축구장 |
| 화원테니스장 |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
| 다사매곡테니스장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 테니스장 |
| 현풍테니스장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 테니스장 |
| 화원게이트볼장 |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 게이트볼장 |
| 다사체육공원 |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
| 가창체육공원 |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
| 명곡체육공원 |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
| 달성스포츠파크 |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
| 진천천파크골프장 | 화원읍 구라리 188-1 | -파크골프장 |
| 논공위천파크골프장 | 논공읍 위천리 651 | -파크골프장 |
| 달성보파크골프장 | 논공읍 남리 1 | -파크골프장 |
| 가창파크골프장 | 가창면 옥분리 778-7 | -파크골프장 |

| 명 칭 | | | 위 치 | 주요 시설 |
|---|---|---|---|---|
| 유가한정파크골프장 | | | 유가읍 한정리 596-1 | -파크골프장 |
| 구지평촌파크골프장 | | | 구지면 평촌리 1-43 | -파크골프장 |
| 강변체육시설 | 낙동강 | 달성강변야구장 |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 야구장, 선수대기실 |
| | | 하빈지구 체육시설 |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
| | 금호강 | 금호강변 체육시설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br>-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br>-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

【별표 2】

#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 구 분 | 사 용 구 분 | | | 체 육 경 기 | | 체 육 경 기 외 | |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군민체육관 | 전용사용 | 체육관 | 주 간 (1시간) | 50,000 | 60,000 | 70,000 | 80,000 |
| | | | 야 간 (1시간) | 60,000 | 80,000 | 80,000 | 100,000 |
| | | 다목적 강 당 | 주 간 (1시간) | 40,000 | 50,000 | 60,000 | 70,000 |
| | | | 야 간 (1시간) | 50,000 | 70,000 | 70,000 | 90,000 |
| | 강 습 료 | | 단체강습 | 월 70,000 (주 3회) | | - | |
| | | | | 월 60,000 (주 2회) | | | |
| | | | | 월 50,000 (주 1회) | | | |
| | | | 개인강습 (1회 20분) | 월 150,000 (주 3회) | | - | |
| | 회 원 권 | | 1일 회원 (2시간) | 5,000 | | - | |
| | |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 30,000 | | - | |
| 가창체육공원 | 축 구 장 | | 주 간 (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 (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 풋 살 장 | | 주 간 (1시간) | 40,000 | 50,000 | - | |
| | | | 야 간 (1시간) | 50,000 | 60,000 | | |
| 다사체육공원 | 축 구 장 | | 주 간 (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 (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 | | 주 간 (1시간) | 40,000 | 50,000 | 90,000 | 120,000 |
| | | | 야 간 (1시간) | 50,000 | 60,000 | 120,000 | 180,000 |
| 명곡체육공원 | 인라인 스케이트장 | | 주・야간 | - | - | - | - |
| |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 | 주 간 (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 (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군민운동장 | | | 주・야간 | - | - | - | - |
| 논공축구장 | 축 구 장 | | 주 간 (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 (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 풋 살 장 | | 주 간 (1시간) | 40,000 | 50,000 | 105,000 | 135,000 |
| | | | 야 간 (1시간) | 50,000 | 60,000 | 135,000 | 165,000 |

| 구 분 | 사 용 구 분 | | | 체 육 경 기 | | 체 육 경 기 외 | |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구 지<br>축 구 장 | 축 구 장 | | 주 간<br>(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br>(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강변야구장 | 마 사 토 | | 주 간<br>(2시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인 조 잔 디 | | | 65,000 | 90,000 | 150,000 | 200,000 |
| 달 성<br>스포츠파크 | 주<br>경기<br>장 | 축 구 장 | 주 간<br>(2시간) | 80,000 | 120,000 | 300,000 | 500,000 |
| | | | 야 간<br>(2시간) | 120,000 | 180,000 | 500,000 | 800,000 |
| | 보조<br>경기<br>장 | 축 구 장 | 주 간<br>(2시간) | 7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 | | | 야 간<br>(2시간) | 100,000 | 150,000 | 300,000 | 450,000 |
| | 다목<br>적체<br>육관 | 전용사용 | 주간<br>(1시간) | 40,000 | | - | |
| | | | 야간<br>(1시간) | 50,000 | | - | |
| | | 강습료 | 단체강습<br>(1회 1시간) | 월 90,000<br>(주 3회) | | - | |
| | | | | 월 70,000<br>(주 2회) | | | |
| | | | 개인강습<br>(1회 20분) | 월 120,000<br>(주 3회) | | - | |
| | | | | 월 100,000<br>(주 2회) | | | |
| | | 개인사용 | 1일 회원<br>(2시간) | 5,000 | | - | |
| | | | 월회원<br>(주5회, 1개월,<br>1일 2시간) | 50,000 | | - | |
| 하빈지구<br>체육시설 | 야 구 장 | | 주 간<br>(2시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축 구 장 | | 주 간<br>(2시간) | 35,000 | 50,000 | 100,000 | 150,000 |
| | 농 구 장 | | 주・야간 | - | - | - | - |
| | 족 구 장 | | 주・야간 | - | - | - | - |

| 구 분 | 사 용 구 분 | | 체 육 경 기 | | 체 육 경 기 외 |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 개인 | 주 간 (2시간) | 면당 12,000 | 면당 16,000 | 면당 24,000 | 면당 32,000 |
| | | 야 간 (2시간) | 면당 24,000 | 면당 28,000 | 면당 48,000 | 면당 56,000 |
| | 단체 |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 면당 150,000 | - | - | - |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 면당 100,000 | - | - |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 개인 | 주 간 (2시간) | 면당 28,000 | 면당 34,000 | - | - |
| | | 야 간 (2시간) | 면당 34,000 | 면당 44,000 | - | - |
| | 단체 | 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 면당 150,000 | - | - | - |
| | | 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 면당 180,000 | - | - | - |
| 테니스 강습료 | 실내테니스장 | 주 3회 | 180,000 | | - | - |
| | | 주 2회 | 120,000 | | - | - |
| | 실외테니스장 | 주 3회 | 130,000 | | - | - |
| | | 주 2회 | 75,000 | | - | - |
| | 1일 강습료 (1회 20분) | 실내테니스장 | 20,000 | | - | - |
| | | 실외테니스장 | 15,000 | | - | - |
| 비 고 |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br>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br>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br>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br>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br>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br>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br>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4조(사용료의 감면)<br>① (생 략)<br>1. ~ 7. (생 략)<br>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br><br>【별표 1】<br>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br><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생 략)</td></tr><tr><td>변경</td><td></td><td>- 게이트볼장</td></tr><tr><td>추가</td><td></td><td></td></tr><tr><td>추가</td><td></td><td></td></tr><tr><td colspan="3">(생 략)</td></tr></table></td><td>제14조(사용료의 감면)<br>① (현행과 같음)<br>1. ~ 7. (현행과 같음)<br>8. ----------<br>------ : 80% 이내<br><br>【별표 1】<br>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br><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가창체육공원</td><td>달성군 가창면<br>가창로 604</td><td>- 풋살장</td></tr><tr><td>논공위천<br>파크골프장</td><td>달성군 논공읍<br>위천리 651</td><td>- 파크골프장</td></tr><tr><td>구지평촌<br>파크골프장</td><td>달성군 구지면<br>평촌리 1-43</td><td>- 파크골프장</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able></td></tr>
</table>

##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 구 분 | 사용구분 | | 체육경기 | | 체육경기외 | |
|---|---|---|---|---|---|---|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생략) | | | | | | |
| <추가> 가 창 체육공원 |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 | | |
| | | 야 간 (1시 간) | | | | |
| <변경> 다 사 체육공원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30,000 | 40,000 | | |
| | | 야 간 (1시 간) | 40,000 | 60,000 | | |
| <변경> 논 공 축구장 |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35,000 | 45,000 | | |
| | | 야 간 (1시 간) | 45,000 | 55,000 | | |
| (생략) | | | | | | |

##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 구 분 | 사 용 구 분 | | 체육경기 | | 체육경기외 | |
|---|---|---|---|---|---|---|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현행과 같음) | | | | | | |
| 가 창 체육공원 |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40,000 | 50,000 | | |
| | | 야 간 (1시 간) | 50,000 | 60,000 | | |
| 다 사 체육공원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40,000 | 50,000 | | |
| | | 야 간 (1시 간) | 50,000 | 60,000 | | |
| 논 공 축구장 | 풋살장 | 주 간 (1시 간) | 40,000 | 50,000 | | |
| | | 야 간 (1시 간) | 50,000 | 60,000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4. (삭제 2015.9.30)
5. (삭제 2021.6.1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월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姙)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 단체 :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재배치 기준 마련(안 제4조)

- 야외 운동기구 미설치 지역, 공공장소 우선 고려 설치
- 접근성 및 이용빈도 극히 저조한 기구는 주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 시 부상자 피해 대비(안 제9조)

○ 기구 고의 파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 마련(안 제10조)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 2의 안내문(경고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안내표시문(제6조 관련)

|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br>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관리번호 | |
| 위 치 | |
| 기 구 명 | |
| 관리부서 | |
| 연 락 처 | |

[별표 2]

# 체육시설 이용 안내(경고)문

| | |
|---|---|
| **체육시설(운동기구 등)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용 전** | **준비운동, 안전점검은 필수, 음주•흡연은 절대 NO**<br>**고혈압, 심장병 및 그 밖의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
| ※ 볼트, 나사 풀림, 기구 흔들거림, 안전장치 등 체육시설(운동기구 등) 안전점검 필수<br>※ 본인 몸에 이상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 | |
| **○ 이용 시** | **체육시설(운동기구 등)에 부착된 이용법 반드시 확인, 절대 장난 금지**<br>**이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기구 이용 즉시 중지** |
| ※ 잘못된 자세, 이용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br>※ 무리한 운동 절대 금지, 각 기구는 한 분씩만 이용하며 일정거리 확보 | |
| **○ 이용 후** | **이용 후 정리운동 꼭!, 이용이 끝난 체육시설(운동기구 등)은 제자리에 고정**<br>**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
| ※ 다음 사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정돈 철저 | |

※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 낙상, 부딪힘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안내문 및 안전수칙을 어겨 사고 발생 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 : 00읍 행정복지센터(053-668-0000) 또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053-659-0000)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제8조제1항 관련)

점검자 : (인)

| 점검일 | 시설명 (관리번호) | 위 치 | 설치기구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 관리번호 | 시설명 | 위 치 | 설치기구 | 수량 | 사업비 | 조성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 ①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참고**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제4조, 7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연간 설치 : 20백만원 × 10개소 = 200백만원

### 나. 추계 결과 : 200백만원 정도(연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200백만 원 정도(연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24) | 2차년도 (2025) | 3차년도 (2026) | 4차년도 (2027) | 5차년도 (2028) | 계 |
|---|---|---|---|---|---|---|---|
| **세 입**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지 방 세**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의존재원 | | | | | | | |
| **세 출**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시설비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재원 조달**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의존재원 | 소 계 | -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수입 | 소 계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 지방세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군 비** |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 - | - | - |

## 6. 작성자: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팀장 전찬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 법 제34조제2항 → 법 제34조제3항

○ 「지역보건법」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 법 제34조제1항 →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3조, 별표)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해당 조문 신설 및 별표 위반 내용 및 부과금액 명시

5.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5조, 제22조, 제34조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각각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제34조제3항----------. |
| 제3조(부과대상)<br>1. ~ 2. (생 략)<br><신 설> | 제3조(부과대상)<br>1. ~ 2. (현행과 같음)<br>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br>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br>① ----------제34조제3항----------. |

제6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위 반 내 용 | 근 거 | 부과금액 (단위:만원) | | |
|---|---|---|---|---|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 50 | 100 | 200 |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 50 | 100 | 200 |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① ---------제34조제3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위 반 내 용 | 근 거 | 부과금액(단위:만원) | | |
|---|---|---|---|---|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 50 | 100 | 200 |
|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 50 | 100 | 200 |
|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500 | 1,000 | 2,000 |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 위 반 내 용 | 근 거 | 부과금액(단위:만원) | | |
|---|---|---|---|---|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 50 | 100 | 200 |
|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 50 | 100 | 200 |
|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500 | 1,000 | 2,000 |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 3. 28.>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9월 5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2년도 종료사업의 반납 및 결산 반영,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이전재원의 변경사항 계상 및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4. **추가경정예산 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회 계 별 |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
| 총 계 | | 1,025,340 | 933,270 | 92,070 |
| 일 반 회 계 | | 1,024,000 | 932,000 | 92,000 |
| 특 별 회 계 | | 1,340 | 1,270 | 70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70 | 0 | 순증 |
| | 의료급여기금 | 712 | 712 | 0 |
| | 치 수 사 업 | 558 | 558 | 0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 장 관 별 | 추 경 예산액 | 기 정 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 총 계 | | 1,025,340 | 933,270 | 92,070 | 9.87 |
| 일반회계 | 계 | 1,024,000 | 932,000 | 92,000 | 9.87 |
| | 지방세수입 | 218,549 | 218,549 | 0 | 0.00 |
| | 세외수입 | 41,989 | 40,384 | 1,605 | 3.98 |
| | 경상적세외수입 | 25,024 | 25,125 | △101 | △0.40 |
| | 임시적세외수입 | 10,547 | 8,880 | 1,668 | 18.78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6,417 | 6,379 | 38 | 0.60 |
| | 지방교부세 | 232,428 | 189,498 | 42,930 | 22.65 |
| | 조정교부금등 | 54,279 | 43,179 | 11,100 | 25.71 |
| | 보조금 | 421,202 | 419,547 | 1,655 | 0.39 |
| | 국고보조금등 | 279,657 | 278,765 | 891 | 0.32 |
| | 시도비보조금등 | 141,545 | 140,781 | 764 | 0.54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5,553 | 20,844 | 34,709 | 166.52 |
| 특별회계 | 계 | 1,340 | 1,270 | 70 | 5.49 |
| | 세외수입 | 34 | 34 | 0 | 0.00 |
| | 경상적 세외수입 | 4 | 4 | 0 | 0.00 |
| | 임시적 세외수입 | 30 | 30 | 0 | 0.00 |
| | 보조금 | 703 | 634 | 69 | 10.84 |
| | 국고보조금등 | 576 | 507 | 69 | 13.56 |
| | 시도비보조금등 | 127 | 127 | 0 | 0.00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03 | 602 | 1 | 0.16 |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 분 야 별 | 추 경 예산액 | 기 정 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 총 계 | | 1,025,340 | 933,270 | 92,070 | 9.87 |
| 일반회계 | 계 | 1,024,000 | 932,000 | 92,000 | 9.87 |
| | 일반공공행정 | 56,776 | 54,707 | 2,069 | 3.78 |
| | 공공질서및안전 | 6,798 | 6,780 | 18 | 0.27 |
| | 교육 | 17,486 | 16,785 | 701 | 4.18 |
| | 문화및관광 | 74,452 | 58,854 | 15,598 | 26.50 |
| | 환경 | 28,653 | 28,527 | 126 | 0.44 |
| | 사회복지 | 392,065 | 390,997 | 1,069 | 0.27 |
| | 보건 | 26,330 | 26,517 | △187 | △0.70 |
| | 농림해양수산 | 70,236 | 67,261 | 2,975 | 4.42 |
| |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 6,801 | 5,278 | 1,523 | 28.86 |
| | 교통및물류 | 94,322 | 84,135 | 10,187 | 12.11 |
| | 국토 및 지역개발 | 77,933 | 67,925 | 10,008 | 14.73 |
| | 예비비 | 11,591 | 11,821 | △230 | △1.95 |
| | 기타 | 160,556 | 112,413 | 48,142 | 42.83 |
| 특별회계 | 계 | 1,340 | 1,270 | 70 | 5.49 |
| | 사회복지 | 634 | 634 | 0 | 0.00 |
| |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 57 | 0 | 57 | 순증 |
| | 국토 및 지역개발 | 278 | 265 | 12 | 4.57 |
| | 기타 | 372 | 371 | 1 | 0.26 |

• 성질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 분야별 | 추경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감 | 증감율 (%) |
|---|---|---|---|---|---|
| 총계 | | 1,025,340 | 933,270 | 92,070 | 9.87 |
| 일반회계 | 계 | 1,024,000 | 932,000 | 92,000 | 9.87 |
| | 인건비 | 95,885 | 95,300 | 585 | 0.61 |
| | 물건비 | 48,199 | 45,843 | 2,356 | 5.14 |
| | 경상이전 | 535,619 | 534,586 | 1,033 | 0.19 |
| | 자본지출 | 275,871 | 235,191 | 40,680 | 17.30 |
| | 시설비및부대비 | 247,191 | 208,161 | 39,029 | 18.75 |
| | 민간자본이전 | 12,638 | 11,100 | 1,538 | 13.86 |
|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3,970 | 3,970 | 0 | 0.00 |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1,923 | 1,849 | 74 | 3.98 |
| | 자산취득비 | 10,150 | 10,111 | 39 | 0.38 |
| | 내부거래 | 42,013 | 1,976 | 40,037 | 2026.10 |
| | 기타회계등전출금 | 31 | 30 | 1 | 3.19 |
| | 기금전출금 | 41,982 | 1,946 | 40,036 | 2057.29 |
| | 예비비및기타 | 26,413 | 19,103 | 7,310 | 38.26 |
| | 예비비 | 11,591 | 11,821 | △230 | △1.95 |
| | 반환금기타 | 14,822 | 7,282 | 7,540 | 103.54 |
| 특별회계 | 계 | 1,340 | 1,270 | 70 | 5.49 |
| | 인건비 | 293 | 293 | 0 | 0.00 |
| | 물건비 | 41 | 41 | 0 | 0.00 |
| | 경상이전 | 614 | 614 | 0 | 0.00 |
| | 자본지출 | 159 | 90 | 69 | 76.38 |
| | 시설비및부대비 | 159 | 90 | 69 | 76.38 |
| | 예비비및기타 | 233 | 232 | 1 | 0.41 |
| | 예비비 | 155 | 155 | 0 | 0.00 |
| | 반환금기타 | 79 | 78 | 1 | 1.23 |

###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목록

(단위: 백만 원)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기획예산실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지원팀) | 16,115 | 16,644 | 529 | |
| | 주요 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 | 80 | 230 | 150 | |
| |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 250 | 300 | 50 | |
| | 군정 주요업무 TV 스팟광고 | 150 | 300 | 150 | |
| |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200 | 300 | 100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 0 | 40,000 | 40,000 | |
| 정책추진단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2 | 110 | 88 | |
| | 달성중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설계비 | 0 | 250 | 250 | |
| |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 | 0 | 5,700 | 5,700 | |
| |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 0 | 4,000 | 4,000 | |
| | 화원초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설계비 | 0 | 140 | 140 | |
| 자치행정과 | 가창면 도시브랜딩 연구 용역 | 0 | 50 | 50 | |
| 정보통신과 | 다목적용 CCTV 설치 ('22년 특교세 2억포함) | 300 | 500 | 200 | |
| | 등산로 등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 0 | 300 | 300 | |
| 일자리경제과 |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1,000 | 1,300 | 300 | |
| | 마을기업 육성사업(예산성립전 사용) | 25 | 108 | 83 | 보조 |
| | 달성 첨단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 (필수지원) | 323 | 416 | 93 | 보조 |
|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 72 | 122 | 50 | 보조 |
| |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 지원 | 1,000 | 2,230 | 1,23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교통과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추진 | 390 | 465 | 75 | 보조 |
| |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8,000 | 7,800 | △200 | 보조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긴급 복구(단가계약) | 500 | 700 | 200 | |
| | 교통신호기 설치·정비 및 긴급보수 (단가계약) | 500 | 550 | 50 | |
|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단가계약) | 200 | 300 | 100 | |
| |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단가계약) | 300 | 450 | 150 | |
| | 안전시설 확충 및 긴급보수 | 300 | 500 | 200 | |
| |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1,100 | 850 | △250 | |
| | 현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1,200 | 1,050 | △150 | |
| | 현풍 부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400 | 300 | △100 | |
| 환경과 | 용흥지 데크로드 설치 | 150 | 250 | 100 | |
| 농업정책과 | 유기질비료 지원 | 783 | 705 | △78 | 보조 |
| | 토양개량제 지원 | 212 | 101 | △111 | 보조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230 | 0 | △230 | 보조 |
| | 채소가격안정지원 | 942 | 518 | △424 | 보조 |
|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105 | 0 | △105 | 보조 |
| 청소위생과 | 폐기물 처분 부담금 | 532 | 459 | △73 | |
|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 300 | 205 | △95 | |
| 교육정책과 |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관급자재 변경분 등) | 0 | 150 | 150 | |
| |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 239 | 39 | △20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br>예산액 | 추 경<br>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교육정책과 |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 180 | 0 | △180 | |
| | 가정양육지원 사업 | 2,167 | 1,807 | △360 | 보조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33,082 | 32,221 | △860 | 보조 |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17,369 | 17,677 | 308 | 보조 |
| | 시간제보육 지원 | 309 | 359 | 50 | 보조 |
| |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국비사업) | 122 | 274 | 151 | 보조 |
| | 보조교사 지원 | 4,035 | 4,189 | 155 | 보조 |
|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 312 | 208 | △104 | 보조 |
| |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금 | 0 | 516 | 516 | |
|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br>(다사초, 동곡초) | 0 | 105 | 105 | |
| |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 2,062 | 2,391 | 329 | |
| 복지정책과 |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 275 | 325 | 50 | |
| |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br>설계용역비 | 275 | 325 | 50 | |
| |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 300 | 400 | 100 | |
| |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 | 62 | 7 | △55 | 보조 |
|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설계비 | 0 | 70 | 70 | |
| | 시설관리공단(여성문화복지센터)<br>경상전출금 | 1,357 | 1,521 | 164 | |
| 생활보장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36,759 | 36,981 | 222 | 보조 |
| |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 494 | 277 | △217 | 보조 |
| 희망지원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 1,406 | 1,486 | 80 | 보조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br>예산액 | 추 경<br>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희망지원과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br>(예산성립전 사용) | 517 | 757 | 240 | 보조 |
| | 활동보조 가산수당 | 223 | 432 | 210 | 보조 |
|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 618 | 869 | 251 | 보조 |
| 건설과 | 미지급용지 보상비 | 300 | 480 | 180 | |
| | 화원 성산리(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1,100 | 0 | △1,100 | |
| | 다사 세천리(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50 | 50 | |
| |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100 | 370 | 270 | |
| |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2,900 | 3,050 | 150 | |
| | 유가 유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460 | 560 | 100 | |
| |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0 | 100 | 100 | |
| | 옥포 강림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 500 | 600 | 100 | |
| | 옥포 간경리 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250 | 0 | △250 | |
| | 옥포 강림리 180-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 가창 우록리(1423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 100 | 300 | 200 | |
| |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 2,199 | 2,699 | 500 | |
| | 하빈 기곡1리 터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0 | 350 | 350 | |
| |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 30 | 180 | 150 | |
| | 하빈 감문2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935 | 685 | △25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건설과 | 하빈 감문1리(마을회관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 | 200 | 150 | △50 | |
| |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500 | 500 | |
| | 현풍 지2리 72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500 | 700 | 200 | |
| | 유가 음리 367-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200 | 200 | |
| | 옥포 본리리 2176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 500 | 700 | 200 | |
| | 현풍 중리 451-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 논공 금포리 1973-1번지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 | 0 | 90 | 90 | |
| | 옥포 본리리 113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200 | 200 | |
| | 유가 유곡~도의리 도로 확포장 (구, 유가초등학교) | 496 | 796 | 300 | |
| | 유가 가태2리(예연서원) 진입도로 확포장 | 750 | 950 | 200 | |
| | 현풍 지리 681번지선 도로정비 | 160 | 260 | 100 | |
| | 하빈 하산2리 540번지선 (하산교회 앞) 마을안길 정비 | 0 | 200 | 200 | |
| |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 1,000 | 1,200 | 200 | |
| | 도로 긴급보수비 | 700 | 1,000 | 300 | |
| | 도로굴착복구 | 2,000 | 4,491 | 2,491 | |
| |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 60 | 120 | 60 | |
| | 유가 양2리(중뫼마을) 도로확포장 | 560 | 710 | 150 | |
| | 옥포 간경리 925-3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 | 110 | 160 | 50 | |
| | 옥포 김흥리 736번지선 도로확장 | 150 | 448 | 298 | |
| | 구지 가천리 433번지선 마을안길확장 | 100 | 150 | 5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건설과 | 논공 금포리 720번지 일원 도로정비 | 300 | 850 | 550 | |
| | 논공 하1리 마을안길 확포장 | 30 | 130 | 100 | |
| | 옥포 강림리 170-4번지 일원 도로정비 | 10 | 210 | 200 | |
| | 현풍 중리 107-1번지선 인도 정비 | 20 | 100 | 80 | |
| | 하빈 동곡리 813-1번지 일원 도로확장 | 20 | 120 | 100 | |
| | 국가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 | 0 | 300 | 300 | |
| | 가창 주리 산230-12번지 일원 도로 사면정비 | 0 | 200 | 200 | |
| | 유가 쌍계리 654번지(쌍계오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0 | 100 | 100 | |
| | 유가읍 봉리 610-3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 | 0 | 150 | 150 | |
| | 논공 금포천(우신미가뷰) 신설교량 가설 | 0 | 50 | 50 | |
| | 현풍 학산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 | 0 | 80 | 80 | |
| | 현풍 대2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 0 | 500 | 500 | |
| | 구지 징리 75-5번지 일원 도로정비 | 0 | 150 | 150 | |
| 안전총괄과 |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읍면) | 200 | 300 | 100 | |
| | 폭염대응 경감시설 클린로드 설치 | 300 | 206 | △94 | |
| |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 | 150 | 200 | 50 | |
| |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 소하천 정비공사(전환사업) | 250 | 508 | 258 | |
| | 다사 문양리 1027번지선 문양소하천 정비공사 | 40 | 125 | 85 | |
| | 유가 초곡리 173-3번지선 하천정비 공사 | 30 | 80 | 50 | |
| | 가창 상원리 216-2번지 일원 제방도로 정비공사 | 30 | 300 | 27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안전총괄과 | 구지 오설리 16번지선 큰골소하천 정비공사 | 40 | 240 | 200 | |
| | 기세곡천 취수장 시설개선사업 | 0 | 450 | 450 | |
| |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 994 | 1,194 | 200 | |
| 도시계획과 |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 | 0 | 1,100 | 1,100 | |
| | 다담센터(거점공간) 조성 및 부지매입 | 0 | 2,000 | 2,000 | |
| | 논공 경관향상을 위한 노후 간판정비사업 | 0 | 800 | 800 | |
| 도시정비과 | 다사 달천리 109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 | 80 | 11 | △69 | |
| | 하수도 긴급 보수 | 200 | 500 | 300 | |
| |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 450 | 700 | 250 | |
| | 저수지 유지관리 | 200 | 350 | 150 | |
| | 하빈 하산2리(44-3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 300 | 500 | 200 | |
| | 화원 본리리(1496번지선)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공사 | 0 | 100 | 100 | |
| | 가창 단산리(855번지선) 농로개설공사 | 0 | 90 | 90 | |
| | 가창 냉천리(49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 0 | 90 | 90 | |
| | 가창 단산리(57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 0 | 230 | 230 | |
| | 구지 고봉리(434번지선) 농로개설공사 | 0 | 410 | 410 | |
| | 옥포 김흥2리(1003번지선) 농로개설 공사 | 0 | 150 | 150 | |
| | 옥포 반송리(484-3번지선) 농로개설 공사 | 0 | 100 | 100 | |
| | 유가 가태리(158번지선) 용수로 정비 공사 | 380 | 630 | 250 | |
| | 옥포 강림리(400번지선) 용수로정비 공사 | 60 | 180 | 120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도시정비과 | 하빈 기곡리(1086-1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 80 | 130 | 50 | |
| | 유가 용리(68번지선) 관정설치공사 | 100 | 0 | △100 | |
| | 화원 본리지 외 4개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0 | 70 | 70 | |
| 문화예술과 |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전면 보수 공사 | 70 | 1,070 | 1,000 | |
| |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 0 | 50 | 50 | |
| | 문화재 긴급보수비 | 150 | 230 | 80 | 보조 |
| 체육진흥과 | 국민체육센터 경상전출금 | 567 | 651 | 84 | |
| | 군민체육관 경상전출금 | 331 | 381 | 50 | |
| |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경상전출금 | 0 | 242 | 242 | |
| | 공공체육시설 경상전출금 | 505 | 561 | 56 | |
|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 200 | 0 | △200 | |
| |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 450 | 800 | 350 | |
| |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 0 | 87 | 87 | |
|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 0 | 110 | 110 | |
| |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 0 | 994 | 994 | |
| | 현풍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정비 | 1,500 | 1,898 | 398 | |
| | 현풍테니스장 정비 | 0 | 600 | 600 | |
| | 달성보 파크골프장 정비 | 0 | 100 | 100 | |
| 관광과 | 미디어 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 | 0 | 340 | 340 | |
| |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 경상전출금 | 1,184 | 1,410 | 226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 예산액 | 추 경 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관광과 | 환경개선 공사(제초 등 야외시설물 정비) | 0 | 75 | 75 | |
| | 긴급보수비 | 0 | 50 | 50 | |
| | 화원유원지 관광지 조성 | 0 | 70 | 70 | |
| |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공사 | 200 | 150 | △50 | |
| | 비슬산관광지 조성 감리비 | 100 | 20 | △80 | |
| |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금 | 435 | 186 | △249 | |
| | 시설관리공단(비슬산유스호스텔) 경상전출금 | 875 | 962 | 87 | |
| 공원녹지과 | 물산업클러스터 명품경관조성 | 0 | 965 | 965 | 보조 |
| |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 496 | 1,696 | 1,200 | |
| | 공공정원 유지관리 (세천공공정원 등 5개소) | 100 | 200 | 100 | |
| | 화원게이트볼장 정원 조성 | 0 | 500 | 500 | |
| | 죽곡4어린이공원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 0 | 200 | 200 | |
| | 삼실소공원 조성 | 149 | 42 | △107 | |
| | 인흥2소공원 조성 | 248 | 163 | △85 | |
| | 녹지생태도심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0 | 19 | △181 | |
| | 창의놀이터특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100 | 200 | 100 | |
| |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 | 500 | 500 | |
| | 공원 시설물 긴급 보수 | 100 | 200 | 100 | |
| | 시설관리공단(화원동산전기차) 경상 전출금 | 69 | 0 | △69 | |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 정<br>예산액 | 추 경<br>예산액 | 증감액 | 비고 |
|---|---|---|---|---|---|
| 공원녹지과 | 비슬산 휴양림 시설물 보수 | 0 | 50 | 50 | |
|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 0 | 70 | 70 | 보조 |
| | 달창저수지 수변둘레길 조성 | 100 | 0 | △100 | |
| | 산불방지 헬기임차 | 700 | 1,100 | 400 | 보조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재구입 | 700 | 49 | △651 | 보조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 600 | 1,041 | 441 | 보조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 0 | 210 | 210 | 보조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br>(예산성립전 사용) | 0 | 1,097 | 1,097 | 보조 |
| 보건과 | 국가필수 예방접종(유료)-성인용 백신 | 90 | 3 | △87 | |
| |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 | 1,000 | 900 | △100 | |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br>(봉촌보건진료소) | 0 | 181 | 181 | 보조 |
| 건강증진과 | 둘째 자녀이상 출산축하금 | 2,366 | 2,276 | △90 | 보조 |
| | 둘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 283 | 367 | 84 | 보조 |
| | 첫만남이용권 | 3,678 | 3,390 | △288 | 보조 |
| 농촌지도과 |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 50 | 130 | 80 | |
| 구지면 | 국가산단 도로변 환경정비 | 0 | 60 | 60 | |

## 5.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9,332억 원 보다 921억 원(증9.87%)이 증액된 1조 25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320억 원보다 920억 원 증액된 1조 2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0.7억 원 증액된 13억 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429억 원, 조정교부금 1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17억 원, 2022년 종료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결산액 등으로 3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으로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 57억 원,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40억 원,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 11억 원, 다담센터 조성 및 부지매입 20억 원,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보수 공사 10억 원,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12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 등 52건에 84억 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18건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16억 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등 주요사업과 도로정비,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과 같은 주민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9월 5일

2. **제출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교부세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금예금 상반기 이자 결산에 따른 이자 수입을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 22백만 원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증 400억 원
- 지출계획 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 400억 22백만 원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6.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4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기금의 수입계획이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2백만 원이 신규 증액되고, 예치금 지출계획이 4백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2천 4백 5십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관계 법령(발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9월 5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인 현풍읍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22. 1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예산 편성
- 2023. 0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시행
- 2023. 03. : 원교리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 2023. 05. : 원교리 주민협의체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05.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상인회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07. : 국비 공모사업 1차 사전컨설팅
- 2023. 08. : 현풍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 2023. 09. : 국비 공모사업 2차 사전컨설팅
- 2023. 09. : 현풍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
- 2023. 09. : 국비 공모사업 신청

- 2023. 10. : 활성화계획 시·도평가(서면 · 현장 · 발표평가)
- 2023. 11. : 중앙평가 및 국비지원 타당성 검토(국토부)
- 2023. 12. :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사 업 명 : 북적북적 백년시장 왁자지껄 드림마루
- 사업기간 : 2024 ~ 2027
- 대 상 지 : 현풍읍 원교1,2리 일원(159,000㎡)
- 사 업 비 : 288.08억원 (국 144.04 시 72.02 군 72.02)
- 사업내용

| 사 업 내 용 | | | 세부내용 | 사업비(백만원) | 비고(위치) |
|---|---|---|---|---|---|
| 마중물 사업 H/W | ⓐ 지역특화 시설조성 | 드림-on파크 조성 | 어린이놀이터, AR·VR 교육체험, 주민휴게공간 | 21,728 | 원교 어린이공원 |
| | | 소 계 | | 21,728 | |
| | ⓑ 시 장 재활성화 | 시장아카데미 운영 | 깨비쌤 문화교실 | 634 | 상가점포 시장 주변골목 |
| | | 시장 환경개선 | 시장간판개선, 특화가로, 상가스마트빗물받이 설치 | 1,876 | |
| | | 소 계 | | 2,510 | |
| | ⓒ 주민커뮤니티 활 성 화 | 주민공동이용시설 | 생활체육실, 다목적실 등 | 1,823 | 원교1리 회관 신축 |
| | | 도시재생거점시설 | 재생교육실, 문화교실 등 | 2,417 | 원교2리 회관 신축 |
| | | 소 계 | | 4,240 | |
| | ⓓ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 활성화계획수립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 180 | |
| | | 종합성과지표 관리분석 | 종합성과지표 관리분석 용역 | 150 | |
| | | 소 계 | | 330 | |
| 계 | | | 마중물사업 ⓐ+ⓑ+ⓒ+ⓓ | 28,808 | |

## 5.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부에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노후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는 지난해 10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편성, 2023년 3월에 용역을 시행한 이후 5월에 주민협의체 사업설명회, 현풍시장 상인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에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원교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공모가 선정, 추진된다면 공동화 현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상대적 낙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확충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사업계획 구상도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사업계획 구상도


북적북적 백년시장 착한지껄 드림마루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일원
◦사업규모 : 159,000㎡
B-2 시장환경개선
E-2 깨비뱅 문화교실 운영
C-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E-3 브랜드개발 및 상품제작 판매
E-4 마을기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
E-5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E-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C-2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
E-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E-7 도시재생거점시설 진입로 개설
A 드림-On파크 조성
E-1 드림-On파크 운영관리 컨설팅
E-8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A 지역특화시설조성사업
드림-On파크 조성(H/W) 217.28억원
b 시장재활성화사업
B-1 시장아카데미시설 조성(H/W) 6.34억원
B-2 시장환경개선(H/W) 18.76억원
C 주민커뮤니티활성화사업
C-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H/W) 18.23억원
C-2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H/W) 24.17억원
D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D-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S/W) 1.8억원
D-2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S/W) 1.5억원
E 자자체사업(S/W)
E-1 드림-On파크 운영관리 컨설팅 1.00억원
E-2 깨비뱅 문화교실 운영 1.00억원
E-3 브랜드개발 및 상품제작 판매 1.00억원
E-4 마을기업 및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 2.30억원
E-5 주민공동체 활성화지원 1.00억원
E-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40억원
E-7 도시재생거점시설 진입로 개설 1.58억원
E-8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36.28억원

**참고** **관계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